관리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

연 구 자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구 책 임 자 : 김 성 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 여 연 구 자 : 김 선 경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황 인 용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제 출 문

법원행정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관리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8.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용 목차

제1장 들어가며 ····· 1

제2장 현행 관리위원회 제도의 개요(연혁, 구성, 의결, 업무 및 권한 등) ····· 5

제1절 관리위원회 제도의 도입 목적, 법적 근거, 연혁 등 ····· 7

Ⅰ. 도입 목적 ····· 7

Ⅱ. 법적 근거 ····· 7

Ⅲ. 연혁 ····· 8

제2절 관리위원회의 구성 ····· 10

Ⅰ. 조직 ····· 10

Ⅱ. 위원장, 부위원장, 주무위원 ····· 10

Ⅲ. 자격 ····· 11

Ⅳ. 관리위원 및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 12

Ⅴ. 신분보장 ····· 12

Ⅵ. 보수 ····· 12

Ⅶ. 지위 ····· 13

제3절 회의 및 의결 ····· 13

Ⅰ. 소집 ····· 13

Ⅱ. 의견 제출 의무 ····· 13

Ⅲ. 의결 ····· 14

제4절 업무 및 권한 ····· 14

Ⅰ. 개요 ····· 14

Ⅱ. 의견제시 업무 ····· 16

Ⅲ. 도산절차관계인 지도 업무 ····· 18

Ⅳ. 도산절차관계인 감독 업무 ····· 18

Ⅴ. 법원의 위임사무 처리 업무 ····· 23

제3장 회생·파산 위원회 제도 ····· 27

제1절 도입 배경 등 ····· 29

제2절 조직과 구성 등 ····· 30

제3절 업무 및 권한 ····· 31

Ⅰ. 업무 ····· 31

Ⅱ. 운영 ····· 33

제4절 현황 ····· 34

제4장 해외 제도 ····· 37

제1절 미국의 제도 : 연방파산관리인(Bankruptcy Administrator, 이하 "BA") 제도 ····· 39

Ⅰ. 개관 ····· 39

Ⅱ. 선임과 해임 ····· 40

Ⅲ. 감독 ····· 41

Ⅳ. 소속과 지위 ····· 42

Ⅴ. 기능과 역할 ····· 42

Ⅵ. 평가 ····· 44

제2절 영국의 제도 : 도산실무가(insolvency practitioner) 및 도산국(the Insolvency Agency) ··· 46

Ⅰ. 도산실무가 제도의 도입 배경 ····· 46

Ⅱ. 도산실무가의 업무 등 ····· 47

Ⅲ. 도산실무가에 대한 자격 승인 ····· 48

Ⅳ. 공동 도산 시험 ····· 50

Ⅴ. 도산실무가에 대한 관리 ····· 51

Ⅵ. 도산국(the Insolvency Agency) ····· 51

Ⅶ. 기업 갱생 전문가 협회(the Association of Business Recovery Professionals) ··· 55

Ⅷ. 전문 단체 ····· 58

제3절 독일의 제도 : 사법보좌관 제도 ····· 59
Ⅰ. 독일 도산절차의 개관 ····· 59
Ⅱ. 도산법원(Insolvenzgericht) 및 사법보좌관의 역할 ····· 61
Ⅲ. 도산관재인의 선임과 감독 ····· 63
Ⅳ. 평가 ····· 63
제4절 일본의 제도 : 회사갱생절차 및 민사재생절차의 감독위원 제도 ····· 65
Ⅰ. 일본의 법적 도산절차의 개요 ····· 65
Ⅱ. 일본 회사갱생절차의 감독위원 제도 ····· 73
Ⅲ. 일본 민사재생절차의 감독위원 제도 ····· 77

제5장 현행 관리위원회 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에 관한 각계의 의견 ···· 81

제1절 현행 관리위원회 제도의 현황 ····· 83
Ⅰ. 상임 관리위원들의 현황 ····· 83
Ⅱ. 도산절차별 담당 업무 ····· 83
제2절 관리위원들의 개선 의견(사법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 85
제3절 현행 관리위원회 제도 및 실무 개선 방향에 관한 종전 의견들 및 각 의견들에 대한 검토 ···· 87
Ⅰ. 대심구조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 ····· 87
Ⅱ. 재판기능과 관리감독기능의 분리, 법원과 분리된 감독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 89
Ⅲ.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감독기능이 미흡하다는 의견 ····· 91
Ⅳ. 관리위원의 허가사무처리가 재판청구권의 침해라는 의견 ····· 92
제4절 설문조사 결과 ····· 94
Ⅰ. 관리위원회의 구성 관련 ····· 94
Ⅱ. 관리위원의 수, 업무량 등 관련 ····· 95
Ⅲ. 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관련 ····· 96
Ⅳ. 관리위원회 제도의 구조적인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 ····· 97
Ⅴ. 기타 현행 제도의 장·단점, 개선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 98

제6장 관리위원회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 99

제1절 제도의 폐지 여부 등에 관하여 ····· 101

제2절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감독 기능 관련, 회생·파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 103

제3절 관리위원회 인력 구성 등에 관한 의견 ····· 104

Ⅰ. 출신지의 배분 관련 ····· 104

Ⅱ. 관리위원회의 증원 필요성 ····· 106

제4절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지도 업무 등의 개선 방향

: 주무 관리위원의 업무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규 등 정비 필요 ····· 107

제5절 관리위원회에 대한 업무 지원 방안 ····· 109

제6절 관리위원의 업무 수행 관련 규칙의 재정비 및 업무수행 모니터링

: 관리위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규정의 활성화 방안 ····· 110

제7장 결론 ····· 113

제1장

들어가며

관리위원회 제도는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위원회의 보조를 받아 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법원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신속·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1998. 2. 24. 회사정리법 개정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 간 우리나라의 도산절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위 기간 동안 관리위원회 제도가 우리나라의 법적 도산절차 선진화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나, 이제는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관리위원회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재점검하고,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도산절차에 맞게 제도를 적절히 수정·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회생절차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① 법인 회생절차에서 채권자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채권자들이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거나 개인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의 선임을 확대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사무관이 아닌 외부회생위원(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이 관여하게 하는 등 도산절차 전반에 걸쳐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② 2013년 대법원에 관리감독 및 회생제도 전반에 관한 정책 및 자문을 위한 독립된 기구인 회생·파산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③ 2017. 3. 설치된 도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도산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도산 전문 법관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사정 등이 주목되고, 이러한 제도 개선을 흐름 속에서 관리위원회 제도 또한 어느 정도의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연구보고서에서는 실증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1998년 당시의 관리위원회 제도의 도입 배경, 취지 및 목적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 보고, 현재 관리위원회 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리위원회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유사제도를 분석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착안점을 찾아 보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더하여 회생 제도의 세부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관리위원회, 특히 주무 관리위원이 채무자를 비롯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소위 도산절차관계인)과 다양한 국면에서 접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제로 회생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방면의 실무자들로부터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리하였다. 또한, 관리위원회 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함께 개진하였다.

제2장

현행 관리위원회 제도의 개요(연혁, 구성, 의결, 업무 및 권한 등)

관리위원회 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밝히는 것에 앞서서 우선 현행 관리위원회 제도의 연혁 등을 정리하고 법령 및 서울회생법원의 준칙 등을 바탕으로 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의 현황에 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절 관리위원회 제도의 도입 목적, 법적 근거, 연혁 등

Ⅰ. 도입 목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적정·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회생법원에 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는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회생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으로서 총 14개 법원이다.

이처럼 관리위원회 제도는 도산절차의 적정성,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관리위원회는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위원들로 구성되어 회생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법원의 허가 업무 등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함으로써 도산절차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한다.[1)]

Ⅱ. 법적 근거

채무자회생법은 제15조 내지 제19조의2에서 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업무 권한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제4판, 박영사(2014), 199쪽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조에서는 관리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2장(제13조 내지 제33조)에서는 관리위원회에 관한 각종 위임 사항 및 기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Ⅲ. 연혁[2)]

관리위원회 제도는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위원들로 구성된 관리위원회의 보조를 받아 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일상적인 허가업무 등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도산절차의 적정·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8. 2. 24.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의 개정 당시 도입되었다.

당시 회사정리법 제93조의3은 법원의 업무전문성과 업무경감을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원의 지휘를 받아 관리인 및 조사위원의 선임에 대한 의견제시, 정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정리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3)] 애당초 회사정리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에만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2001. 2. 19.부터 인천, 수원, 대구지방법원에도 설치되었고, 그 후 지속적으로 설치 대상 법원이 확대되었다.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역할은 채무자회생법의 신설 과정에서 상당 부분 보완되었다. 우선 상임 관리위원을 과반수 이상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관리위원 중 과반수는 상임으로 한다는 회사정리법(제93조의4 제2항)의 규정은 채택하지 않았다(제16조 제1항). 또한 관리위원의 자격으로 회사정리법(제93조의4 제3항 제2호)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던 것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

2) 법무부 법무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해설(법무자료 제272집), 81쪽 이하 참조

3) 뿐만 아니라 당시 법 개정을 통하여 채권자협의회가 설치되었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사건(동법 제173조의2 제1항 단서)과 채무자가 영업자인 화의사건(화의법 제49조의2 제1항) 전부에 대하여 10인 이내의 주요 채권자들로 하여금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채권자에 대한 정보전달, 채권자의 의견전달,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조정 및 법원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회사정리절차와 법원의 감독이 미약한 화의절차에 채권자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 대상 금융기관이 확대되었다.

이에 더하여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위원과 국제도산관리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들의 선임에 대한 의견 제시가 추가되었고(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1항 1호),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추가되었다(같은 항 제3호).

또 관리위원회 권한 및 임무에 대한 일반 조항으로 회사정리법(제93조의3 제1항 제6호)은 "기타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라고 규정하였는데 채무자회생법은 "그 밖에 대법원규칙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라고 규정하여 해당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는 법률에 명기되지 않은 업무 및 권한으로 일반적인 것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고 당해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법원이 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구 파산법(제101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타 파산절차에 관한 사무" 부분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회사정리법(제54조의3)은 관리위원은 법원의 위임을 받아 허가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는데 관리위원의 그러한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리위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관리위원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따른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만일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송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어 이에 상당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통합도산법은 관리인이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상당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이를 법원에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제19조 제2항).

한편 회사정리법(제95조의2)은 중소기업인 경우 관리위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익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화의절차의 정리위원이나 관재인에게도 같은 규정이 있었다).

제2절 관리위원회의 구성

Ⅰ. 조직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회생법원장이 위촉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채무자회생법 제16조 제1항, 제3항). 채무자회생법 제16조 제6항에 의하여 관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규칙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칙에 따르면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하고, 관리위원은 상임으로 할 수 있다. 상임 관리위원은 전임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규칙 제14조 제1항, 제2항).

관리위원의 수는 각 법원의 사정에 따라 정하고, 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6조 제2항). 예를 들어,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2017. 7. 15. 기준으로 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상임 관리위원 9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외에 5명의 비상임 관리위원을 두고 있다.

한편, 회생법원장이 관리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규칙 제14조 제3항).

Ⅱ. 위원장, 부위원장, 주무위원

위원장은 당해 관리위원회 소속 관리위원 중에서 회생법원장이 지명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규칙 제15조 제1항).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의장으로서 대외적으로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규칙 제15조 제2항). 부위원장은 상임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규칙 제15조 제3항, 제4항).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 관리위원을 주무위원으로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규칙 제16조). 주요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기타 사항은 주무 관리위원이 단독으로 수행하게 된다.

Ⅲ. 자격

1. 적극적 자격요건

채무자회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관리위원은 ①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② 은행법에 의한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상장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자, ④ 법률학·경영학·경제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⑤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회생법원장이 위촉한다.

2. 소극적 자격요건

채무자회생법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다른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Ⅳ. 관리위원 및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채무자회생법 제16조 제2항). 한편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관리위원 중에서 임명되는데, 그 임기는 1년이다(규칙 제15조 제1항).

Ⅴ. 신분보장

채무자회생법 제16조 제6항은 "관리위원회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관리위원의 자격요건ㆍ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칙 제17조에 따라 관리위원은 ① 소극적 자격요건에 해당하게 된 때, ②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③ 법령 또는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관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Ⅵ. 보수

규칙 제18조 제1항은 "관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임 관리위원의 경우는 전임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에 해당하는 금액[4]을 지급받고, 비상임 관리위원은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장이 정하는 회의 출석수당을 지급받는다(규칙 제18조 [별표2]).

한편 관리위원이 개인회생절차의 회생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위 보수와 별도로 채무자회생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다(규칙 제18조 제2항).[5]

---

4)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시행 2017. 7. 26.) [별표 33]에 의하면,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에 해당하는 연 보수는 상한액 70,041,000원, 하한액 46,670,000원이다.

5) 제30조(관리인 등의 보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수 및 특별보상금의

Ⅶ. 지위

채무자회생법 제16조 제7항에 의해 관리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절 회의 및 의결

Ⅰ. 소집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규칙 제23조 제1항). 또한 법원이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요구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즉시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규칙 제23조 제2항).

Ⅱ. 의견 제출 의무

관리위원회는 법원으로부터 의견을 요청 받은 경우 신속하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28조 제1항). 법원이 의견 제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넘겨서는 아니 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규칙 제28조 제2항).

액은 법원이 정한다.
1. 관리인·관리인대리·보전관리인·파산관재인·파산관재인대리
2.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회생위원·고문
3.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특별보상금은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Ⅲ. 의결

채무자회생법 제16조 제5항에 의해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권은 서면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규칙 제24조).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리위원회가 그 의결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규칙 제23조 제3항).

제4절 업무 및 권한

Ⅰ. 개요

관리위원회의 업무는 크게 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업무[6]와 그 외 개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1항 이외에 개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로는, ①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채무자회생법 제42조), ②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 및 그 변경·취소 등에 대한 의견의 제시(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 제3항, 제4항), ③ 회생계획인가 전 영업 등의 양도의 허가에 대한

6) 채무자회생법 제17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①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관리인·보전관리인·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파산관재인·회생위원 및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2. 관리인·보전관리인·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파산관재인 및 회생위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 및 평가
3.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4. 채권자협의회의 구성과 채권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6. 관계인집회 및 채권자집회와 관련된 업무
7. 그 밖에 대법원규칙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의견의 제시(채무자회생법 제62조 제2항), ④ 법인의 이사 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의견의 제시(채무자회생법 제114조 제4항), ⑤ 회생채권의 변제허가에 대한 의견의 제시(채무자회생법 제132조 제3항) 등이 있다.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업무 내용의 특성에 따라 분류해 보면, ① 절차 전문가로서 의견제시 업무, ② 행정적 처리 업무, ③ 도산절차관계인 지도업무, ④ 도산절차관계인 감독업무, ⑤ 법원의 위임 사무 처리업무 등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다.[7] 법률상 ① 내지 ④의 업무는 관리위원회의 업무이고 ⑤의 업무는 관리위원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관리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2항). 관리위원회가 업무의 일부를 특정 관리위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규칙 제25조 제1항).

법원은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대하여 다른 관리위원에게 그 업무를 위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3항). 관리위원회가 법원으로부터 관리위원의 교체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관리위원을 교체한 후 이를 법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규칙 제25조 제2항). 실무상 신건이 회생법원에 접수되면 재판부 배당과 함께 주무 관리위원이 지정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주무 관리위원이 위임받은 허가사무를 단독으로 처리하게 하고 있다.[8]

권한의 면에서 살펴 보면,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규칙 제26조 제1항), 그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또는 관계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규칙 제26조 제2항).

한편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공장 등의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 검사, 확인하게 할 수 있다(규칙 제27조 제1

7) 이상과 같은 분류 방식에 대해서는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미국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연구”, 118쪽 참조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제4판, 박영사(2014), 203쪽

항).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할 수 있다(규칙 제33조).

Ⅱ. 의견제시 업무

1. 도산절차관계인 선임 관련 의견제시

관리위원회는 관리인·보전관리인·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파산관재인·회생위원 및 국제도산관리인 등 도산절차관계인의 선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1항 제1호)[9].

2. 회생계획안 등에 관한 의견제시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회생계획안이나 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1항 제3호).

회생계획안을 엄밀히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관리위원회가 회생계획안이나 변제계획안 등의 면밀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적절하지도 않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재판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10]

연구원들이 실무를 통하여 경험한 것에 의하더라도 실무상 관리위원회(주무 관리위원)가 회생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를 하지는 못하고 있고, 회생계획안의 전체적인 틀, 양식 등에 관하여 소극적인 지도 내지 권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다.

---

9)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한 채무자회생법의 개별 규정에서도 선임 시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 제43조 제3항, 제87조, 제355조 제1항 참조).

10) 오세용 외 3인, "관리위원회 조직개편 및 기능강화 등" [내부보고서], 법원행정처(2014. 8. 25.),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미국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연구", 120쪽에서 재인용

규칙 제22조 제1호 또한 “관리인 및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및 파산채권에 관한 이의 제출 및 회생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지도 또는 권고”를 관리위원회의 수행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2항),[11]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에 관한 보고는 회생위원의 업무로 지정되어 있다(규칙 제88조 제1항 제7호).

즉,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업무는 회생위원의 업무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개인회생 사건 수나 관리위원의 인원수 등에 비추어 관리위원회가 이를 모두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변제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담당하도록 하되, 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회생위원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다.[12]

---

11)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 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12) 오세용 외 3인, “관리위원회 조직개편 및 기능강화 등” [내부보고서], 법원행정처(2014. 8. 25.),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미국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연구”, 121쪽에서 재인용

Ⅲ. 도산절차관계인 지도 업무

관리위원회는 채무자회생법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인, 파산관재인 등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지도업무를 담당한다.

대표적으로는 ① 관리인 및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및 파산채권에 관한 이의제출, 회생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지도 또는 권고를 하고(규칙 제22조 제1호), ② 관리인의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작성이나 시·부인표 작성에 대한 지도 또는 권고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③ 또한 관계인집회 및 채권자집회와 관련된 업무(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1항 제6호)도 지도업무에 속하는 것이다.

반면, 실무상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관리위원회가 채권자집회와 관련해서 담당하는 업무는 거의 없다. 특히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채권자집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4항), 이 경우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절차진행 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02조 제1항 제3호), 관리위원회에 의한 지도업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13)]

Ⅳ. 도산절차관계인 감독 업무

관리위원회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등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한다.

관리위원회는 관리인·보전관리인·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파산관재인 및 회생위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 및 평가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1항 제2호).

13) 오세용 외 3인, “관리위원회 조직개편 및 기능강화 등” [내부보고서], 법원행정처(2014. 8. 25.), 8.,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미국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연구”, 122쪽에서 재인용

1. 회생절차 관리인에 대한 감독 업무

관리인은 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에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월간보고서에는 매출실적, 입금실적, 자금수지총괄표, 자금수지실적명세서, 발행어음 현황, 허가사항총괄표, 지출내역 등이 포함되고,[14]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이 들어 있는 재무상태 요약 등이 포함되며,[15] 연간보고서에는 자본, 영업현황 및 재무상태 요약, 자산 및 부채, 영업 및 자금수지, 회생계획 수행현황 등이 포함된다.[16]

또한 관리인에 대한 평정을 위하여 관리인은 매년 2회 관리위원회에 회사의 주된 업종, 회생절차 진행 경과, 회생계획 요지, 회생계획 수행 상황, 관리인의 장래 대책, 감사의 의견, 조기 종결 또는 인가 후 폐지에 관한 의견 등이 포함된 회사현황보고를 제출하고 있다.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이 제출한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관리인이 수행한 경영성과, 회생계획 수행 상황, 허가·보고사항 준수 여부, 조기 종결 또는 인가 후 폐지에 대한 의견, 관리인 및 감사에 대한 의견 등을 부가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이러한 의견을 참고하여 인가결정이 내려진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에 대한 평정표를 작성하고, 이를 회생·파산위원회에 통보한다.

2. 회생절차 조사위원에 대한 감독

종래 법원은 주무 관리위원이 조사위원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보수금액을 결정할 때 참고하고, 매년 1회 실시하는 조사위원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조사위원 후보자명부를 재조정하였다.[17]

그러나 조사위원은 법원이 명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업무를 중립적으로 담

14)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3호 관리인의 보고서 작성 등 제6조 제1항
15)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3호 관리인의 보고서 작성 등 제7조 제1항
16)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3호 관리인의 보고서 작성 등 제8조 제1항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제4판, 박영사(2014), 286쪽

당하는 자이므로, 관리위원회가 조사위원의 기업가치평가 등 업무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들어 조사위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감독 및 평가는 삭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8)]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현행 서울회생법원은 서울회생법원에 설치된 「조사위원 적임자 명단 관리위원회」가 매년 1월말까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결정, 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의하여 작성된 조사위원 업무수행 평가표와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임자 명단에 등재된 기관 또는 회계법인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조사위원 적임자 명단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은 위원회 위원 중 판사 1인을 조사위원 업무수행 평가표를 관리할 책임자로 지정하고 있다.[19)]

3.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감독 업무

구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2016. 12. 16. 재판예규 제1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5는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파산관재인 후보자 선임 등에 관하여 통일된 예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대법원은 2016. 12. 16.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여 제3조 제1항에서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해당 규정을 통하여 개인파산 및 법인파산 사건에서 모두 파산관재인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관리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되었다.

법원의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부와 관련하여 종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년까지는

18) 오세용 외 3인, "관리위원회 조직개편 및 기능강화 등" [내부보고서], 법원행정처(2014. 8. 25.), 8쪽,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미국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연구", 125쪽에서 재인용

19) 이상의 내용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7호 조사위원의 선임 및 평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파산관재인 후보의 추천을 의뢰하는 등 미리 파산관재인 적임자를 물색하여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두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활용하였다. 그러다가 2009년 이후 법인파산사건이 급증하여 유능한 파산관재인 후보들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9. 1.「개인파산관재인의 선정 및 감독기준(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개인파산실무준칙 제1호)」을 제정하고, 2012. 10. 8.「법인 파산관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준칙(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법인파산실무준칙 제2호)」을 제정하여, 위 규정에 의거 파산관재인 후보자명부를 작성·관리하고, 파산관재인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사 중에서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였다.[20)]

위 각 규정에 의거 개인파산절차에서는「개인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 관리위원회」가, 법인파산절차에서는「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부 관리위원회」가 각 설치되어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후 2016. 12. 16.「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가 제정되었고,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또한 위 예규의 내용을 바탕으로 파산관재인의 선정 절차, 파산관재인에 대한 평정기준을 수립함으로써 파산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 있다.

현행 서울회생법원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01호에 따라 파산관재인의 선정 및 평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될 후보자의 선정, 후보자 명단에서의 삭제, 후보자 명단의 작성,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법관과 관리위원으로 구성된「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 관리위원회」를 두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로 하고, 위원은 법원 소속 부장판사, 판사, 관리위원회 소속 관리위원 중 각 1명 이상을 법원장이 지명한다. 위 위원회는 법인 파산관재인과 개인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을 각각 작성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마다 각 후보자 명단을 새로 작성한다.

한편 법원이 위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후보자를 개별사건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제4판, 박영사(2014), 55~56쪽

때에도 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355조 제1항), 실무상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있어[21] 관리위원회가 파산관재인 선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감독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2년마다 작성되는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 작성 과정에서의 관리위원 참여가 파산관재인 선임에 관한 관리위원회의 의견 제시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개인회생절차의 회생위원에 대한 감독 업무

개인회생사건의 회생위원에는 법원사무관 등의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내부 위원은 법원 내부의 관리감독에 의해 평정이 진행되고, 외부 위원의 경우, 일정 수준에서 관리위원회가 그 평정에 관여한다.

종래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법원사무관 등이 아닌 회생위원 제도 운영에 관한 준칙(개인회생실무준칙 제4호)' 제6조에서 외부회생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 및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여 외부회생위원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였다. 즉, 개인회생담당판사가 각 외부회생위원으로부터 매년 2회씩 업무현황보고서를 제출 받았고, 매년 1회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회생위원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였다. 개인회생담당판사는 매년 2월 10일까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외부회생위원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평가표와 업무현황보고서는 법원이 외부회생위원에 대하여 재위촉하거나 해촉하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도록 하였다.

반면, 현행 서울회생법원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3호 외부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외부회생위원에 대한 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서울회생법원은 법원에 「외부회생위원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로 하고, 위원은 법원 소속 부장판사, 판사, 관리위원회 소속 관리위원 중 각 1명 이상으로 법원장이 지명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3호 외부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의 운영 제2조 제3항, 제4항).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개인파산·회생실무 제4판, 박영사(2014), 99쪽

정기평정의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담당판사는 각 외부회생위원으로부터 매년 6월 및 12월 중에 업무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 받아 이를 기초로 외부회생위원평가표를 작성한다(위 준칙 제3조 제1항). 이때 그 의견서의 적절성이나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리위원회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같은 준칙 제3조 제3항). 외부회생위원평가위원회는 개인회생담당판사가 작성한 외부회생위원 평가표와 관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매년 6월 및 12월 중에 외부회생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평정을 실시하게 된다(위 준칙 제3조 제4항).

한편, 외부회생위원이 품위를 잃은 행위를 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회생위원 업무 처리가 불성실한 경우, 그 밖에 회생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회생위원에 대한 임시평정이 실시된다(위 준칙 제4조 제1항). 이 때 외부회생위원 평가위원회는 평정실시 과정에서 관리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위 준칙 제4조 제2항).

Ⅴ. 법원의 위임사무 처리 업무

1. 법원에 의한 허가사무 위임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1항 각 호[22]가 규정하고 있는 행위 중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허가사무 또는 파산절차에 관한 허가사무를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채

22) 채무자회생법 제61조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재산의 처분
2. 재산의 양수
3. 자금의 차입 등 차재
4.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 소의 제기
6. 화해 또는 중재계약
7. 권리의 포기
8. 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
9.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무자회생법 제18조).

이처럼 법원의 위임사무 처리업무는 '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관리위원'의 업무이다. 위임의 범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29조 내지 제31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허가사무는 규칙 제29조 제1항 각 호[23]에, 파산절차에서 위임할 수 있는 허가사무는 동조 제2항 각 호[24]에 각 규정되어 있다.

2. 처리절차 등

법원의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은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규칙 제30조 제1항). 그 위임은 가액 또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위임하되, 위임의 범위가 명백하도록 하여야 하고(규칙 제30조 제2항), 위임 결정은 관리위원 및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규칙 제30조 제3항). 법원은 위와 같은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규칙 제30조 제4항).

모든 회생사건에서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

23) 제29조(허가사무의 위임) ①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관한 허가사무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허가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의 처분행위(다만,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를 제외한다)
2. 재산의 양수(다만, 제3자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자금의 차입 등 차재
4.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 소의 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그 밖의 소송행위(다만, 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화해 또는 중재계약,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임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의 인사 및 보수결정
7. 계약의 체결 그 밖의 의무부담행위
8. 어음·수표계좌의 설정 및 어음·수표용지의 수령행위
9. 운영자금의 지출
10.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허가사무

24) ②파산절차에 관한 허가사무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허가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동산의 임의매각
2. 채권 및 유가증권의 양도
3. 법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의 청구
4.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허가사무

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허가를 필요로 하는 행위들은 대체로 채무자의 중요결정 사항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지출이 수반되는 법률행위 등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조).[25]

이러한 허가 절차를 통하여 법원은 관리인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통상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정하면서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결정을 동시에 정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법원의 관리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관리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관리위원은 법원으로부터 위임 받아 수행한 허가사무의 처리결과를 매월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규칙 제31조).

한편,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고(채무자회생법 제358조),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각종 업무에 관한 허가신청서의 검토 및 허가 여부의 결정을 담당한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26] 실무상 위와 같은 허가사무를 법원이 관리위원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없다.

3.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위임을 받아 관리위원이 행한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리위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9조 제1항). 이의신청서에는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처분을 한 관리위원의 성명, 3.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처분의 내용, 4.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다(규칙 제32조 제1항). 아울러 신청인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처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32조 제2항).

관리위원은 위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에 따른 상당한 처분을 하고 이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위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위와 같은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같은 조

25)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212호「채무자의 지출행위 중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금액의 기준」에서 채무자의 연간 매출액에 따른 허가 필요 금액의 기준, 회생계획 인가 후 기준의 조정, 포괄허가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제4판, 박영사(2014), 323쪽

제4항).

법원은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는데,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9조 제5항).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27]

실무상 도산절차관계인들이 관리위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제4판, 박영사(2014), 205~206쪽

제3장

회생·파산 위원회 제도

회생·파산위원회는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관계인에 대한 체계적·통일적인 감독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심의·자문위원회이다(회생·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

우리나라의 관리위원회 제도는 도산절차에서의 도산절차관계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① 관리위원 후보자의 추천 및 해촉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 ② 절차관계인에 대한 감독 기능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관리위원회의 제도 개선에 관한 검토를 위해서는 현행 회생·파산 위원회 제도를 간략하게나마 조망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제1절 도입 배경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급증과 한계기업 증가 등으로 도산절차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원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야 하는 도산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실무에 반영함으로써 도산절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3. 11. 28. 회생·파산위원회를 설치하였다.[28)]

회생·파산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권한 등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회생·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관리위원, 파산관재인 등 절차관계인의 선임, 평가 등 감독 업무의 세부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관리위원 위촉지침,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 등 각종 재판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28) 대법원 보도자료,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법지원실 (2013. 11. 28.)

제2절 조직과 구성 등

회생·파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회생·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위원은 법관, 변호사, 대학교수, 행정기관의 공무원,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금융전문가,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위 규칙 제3조 제2항).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데(위 규칙 제3조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위 규칙 제4조).

한편 회생·파산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실무지원단을 두고, 실무지원단의 단장, 간사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위 규칙 제5조 제1항, 제2항). 실무지원단의 사무는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리위원, 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등 도산사건 절차관계인 후보자 추천, 위촉 등에 관한 사항, 및 위 절차관계인들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정기 및 수시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위 규칙 제5조 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위 규칙 제5조 제4항). 위원이 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③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위 규칙 제5조 제5항).

제3절 업무 및 권한

Ⅰ. 업무

회생·파산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회생·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29]

① 회생·파산절차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자문

② 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의 심의 및 자문

③ 관리위원, 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채무자회생법 제601조 제1항 제2호의 회생위원 제외) 등의 후보자 선발·관리·선임·위촉 기준과 절차의 심의 및 자문

④ 관리위원 등 전호에 정한 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자문

⑤ 그 밖에 회생·파산절차의 체계적·통일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1. 관리위원 후보자 추천 등의 업무

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회생법원의 법원장은 관리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회생·파산위원회에 관리위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관리위원 위촉지침 제2조).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방변호사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개발연구원 기타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의 단체 또는 기관을 통하여 관리위원 위촉 후보자를 공개 모집할 수 있다(위 지침 제4조 제1항). 회생·파산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한 심사위원의 서류 및 면접심사 결과를 기초로 심의를 거쳐 관리위원 위촉 후보자 추천을 의결하고, 해당 회생법원의 법원장에게 후보자를 추천한다(위

29) 해당 업무들 중 관리위원, 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등의 후보자 선발·관리·선임·위촉과 평가에 관한 업무의 경우 절차관계인에 대한 감독과 관련성이 높다.

지침 제3조, 제4조).

한편, 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회생법원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상임 관리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회생·파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생·파산위원회는 규칙 제17조 각 호의 사유[30]가 있는 경우 회생법원의 법원장에게 관리위원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위 지침 제5조).

2.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 대한 의견 제시

법원은 파산관재인 업무를 담당할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명단 작성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를 회생·파산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생·파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2조).

또한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회생·파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위 예규 제3조).

3. 외부 회생위원의 위촉·해촉 심사 등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사무관 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함에 있어, 위촉 후보자의 선발 및 위촉, 해촉 등의 심사를 회생·파산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9조의3 제1항).

또한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법원사무관 등이 아닌 회생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회생·파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위 지침 제9조의2 제7항, 제8항).

30) 제17조 (신분보장)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법 제16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법령 또는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관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된 때

4. 관리인 등 후보자의 적격여부 의견 제시

법원은 회생사건의 관리인(채무자의 대표자가 아닌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한함), 보전관리인 또는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과정에서 참고한 자료를 회생·파산위원회에 제공하고 후보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회생·파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 제2항). 또한 법원이 관리인 등을 선임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인 등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회생·파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위 예규 제5조 제5항, 제6항).

5. 조사위원 후보자 명단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조사위원 선정 대상자를 추천받아 일정한 평가를 거쳐 미리 적임자 명단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생·파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회생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제2항).

또한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하고, 후보자 명단 작성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와 평가결과를 회생·파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위 예규 제6조 제5항), 회생·파산위원회는 위 자료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명단에 대한 의견을 해당 법원에 제시하여야 한다(위 예규 제6조 제6항).

Ⅱ. 운영

회생·파산위원회는 반기별 1회의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회생·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회생·파산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조사·연구

의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 청취,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조회나 자료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위 규칙 제7조, 제8조).

제4절 현황[31]

회생·파산위원회는 2013. 11. 28. 최초 설치 당시 법관 2인, 변호사 2인, 대학교수 2인, 행정공무원 1인, 금융전문가 1인, 언론계 전문가 1인, 총 9인(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었고, 2017. 11. 28. 위촉되어 현재 활동 중인 제3기 위원회는 재정경제 분야 전문가인 행정공무원 1인을 증원하여 법관 2인, 변호사 2인, 대학교수 2인, 행정공무원 2인, 금융전문가 1인, 언론계 전문가 1인의 총 10인(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32]

회생·파산위원회는 설치 이후 2017년까지 7차에 걸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관리위원회 실질화, 도산전문법원 설치, 간이회생절차 도입에 따른 회생절차의 접근성·효율성 제고방안 등을 의결하여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나아가 회생·파산위원회는 2016. 10. 13.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직접 도산절차 관계인 선임과정에 관여하고 절차관계인 업무수행에 관한 평가를 하는 등으로 도산감독기능을 활성화하기로 의결하고, 위원 4인을 지정하여 관리위원, 관리인, 회생위원 및 파산관재인 등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게 하는 등 절차관계인 후보자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결의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회생·파산위원회는 2017. 1. 1.부터 2017. 11. 30.까지 각 법원의 관리

31) 이 부분의 내용은 주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미국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연구", 152쪽 이하를참고하였다.
32) 대법원 보도자료,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7차 정기회의 개최", 사법지원실 (2017. 12. 14.)

위원, 관리인, 감사, 파산관재인, 조사위원 후보자 위촉 등에 관하여 총 172건의 의견(적격, 부적격의견 및 부가의견)을 의결하여 해당 법원에 통보하였다.

한편 법원사무관 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선발 등에 관하여는, 개정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2017. 1. 1.부터 회생·파산위원회가 법원행정처장의 요청에 따라 위촉후보자의 선발 심사를 직접 진행함으로써, 수원지방법원 3명, 인천지방법원 6명, 서울회생법원 5명의 회생위원을 심사·선정하였다.

제4장

해외 제도

제1절 미국의 제도 : 연방파산관리인(Bankruptcy Administrator, 이하 "BA") 제도

Ⅰ. 개관[33]

도산절차에 대한 감독은 크게 법원이 절차진행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방식과 법원 외부에 독립된 기관을 두어 감독하는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는 법원이 절차진행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34] 미국의 경우는 위 두 가지 방식 모두를 제도화하여 병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중 법원이 도산절차를 감독하는 제도가 연방파산관리인(BA) 제도이고, 법원과 독립된 법무부 소속 기구가 도산절차를 감독하는 제도가 연방관리관(UST) 제도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앨라배마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연방파산관리인 제도를 실시하고, 위 2개의 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연방관리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35]

---

33)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미국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연구", 25쪽

34) 김주학, "미국 연방관재관 제도의 도입논의에 대한 실무적 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50호 (2010.4.), 60쪽

35) 현재 연방관리관 제도의 시행지역은 다음과 같다.: 28 U.S.C. §581(a)
(a) The Attorney General shall appoint one United States trustee for each of the following regions composed of Federal judicial districts (without regard to section 451):
(1) The judicial districts established for the States of Maine, Massachusetts, New Hampshire, and Rhode Island.
(2) The judicial districts established for the States of Connecticut, New York, and Vermont.
(3) The judicial districts established for the States of Delaware, New Jersey, and Pennsylvania.
(4) The judicial districts established for the States of Maryland,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Virginia, and West Virginia and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5) The judicial districts established for the States of Louisiana and Mississippi.
(6) The Northern District of Texas and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
(7) The Southern District of Texas and the Western District of Texas.
(8) The judicial districts established for the States of Kentucky and Tennessee.
(9) The judicial districts established for the States of Michigan and Ohio.
(10) The Central District of Illinois and the Southern District of Illinois; and the judicial districts established for the State of Indiana.
(11) The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 and the judicial districts established for the State of Wisconsin.
(12) The judicial districts established for the States of Minnesota, Iowa, North Dakota, and South Dakota.
(13) The judicial districts established for the States of Arkansas, Nebraska, and Missouri.
(14) The District of Arizona.
(15) The Southern District of California; and the judicial districts established for the State of Hawaii,

Ⅱ. 선임과 해임

사법부 소속인 연방파산관리인은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5년 임기로 선임되고, 임기 만료 후 재선임 될 수 있다.[36]

선임절차의 경우,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에 관한 연방사법회의(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규정은 연방파산관리인의 공식 주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항소법원으로 하여금 연방파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연방항소법원은 우선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자의 신청을 받고 연방항소법원 산하 선정위원회로 하여금 지원자를 평가하도록 한 다음 파산법관 선발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 연방파산관리인을 선발한다.[37]

연방파산관리인은 변호사 자격의 보유를 그 자격요건으로 하는데, 대체로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중 관리인(trustee)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지원하여 선임된다.[38]

연방파산관리인은 무능력, 부정행위, 직무태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사유로만 해임된다.[39]

---

and for Guam and the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16)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17) The Eastern District of California and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and the judicial district established for the State of Nevada.
(18) The judicial districts established for the States of Alaska, Idaho (exclusive of Yellowstone National Park), Montana (exclusive of Yellowstone National Park), Oregon, and Washington.
(19) The judicial districts established for the States of Colorado, Utah, and Wyoming (including those portions of Yellowstone National Park situated in the States of Montana and Idaho).
(20) The judicial districts established for the States of Kansas, New Mexico, and Oklahoma.
(21) The judicial districts established for the States of Alabama, Florida, and Georgia and for the Commonwealth of Puerto Rico and the Virgin Islands of the United States.
(b) Each United States trustee shall be appointed for a term of five years. On the expiration of his term, a United States trustee shall continue to perform the duties of his office until his successor is appointed and qualifies.
(c) Each United States trustee is subject to removal by the Attorney General.

36) Young-Ho Kong, "A Study on the United States Trustees and Bankruptcy Administrators Programs and a Look at the Korean Bankruptcy Administration System with a View to Establishing an Analogous Program", 비교사법 제17권 2호 (2010), 455쪽

37)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미국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연구", 52쪽

38) 김이경, 도산관리인 및 연방관재인 (2017), 6쪽

39) MANUAL FOR BANKRUPTCY ADMINISTRATORS: JUDICIAL CONFERENCE REGULATIONS AND

한편 연방사법회의 규정(the regulations of the JCUS)은 현직 연방파산관리인의 임기 만료가 가까워지면 재선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연방항소법원(노스캐롤라이나: 제4 연방항소법원, 앨라배마: 제11 연방항소법원)으로 하여금 심사위원회(areview committee)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해당 주 변호사회 회원들(members of the bar)과 일반인(public)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연방항소법원에 연방파산관리인의 재선임 여부를 권고한다. 제11 연방항소법원은 연방파산관리인의 선발, 임명과 재선임에 대한 연방사법회의의 규정, 사법정책지침(the Guide to Judiciary Policy) 및 준거법령(governing statutes)을 보완하는 규정을 두어, 인종(race), 피부 색(color), 성별(sex), 종교(religion) 또는 출신국가(national origin)에 관계없이 연방파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일반인이 현직 연방파산관리인 또는 지원자의 자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기밀로 할 것을 요청할 경우, 현직 연방파산관리인 또는 지원자에게는 의견의 출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유형만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40]

Ⅲ. 감독[41]

연방파산관리인(BA)에 대한 감독은 연방항소법원과 연방법원행정처(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가 담당하고 있다. 1978년 이전에는 파산법관들이 도산사건의 관리감독과 분쟁해결에 모두 관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파산법관이 조사확정재판 등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판단할 때 관리감독 과정에서 알게 된 채무자의 사정까지 고려함으로써, 판단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1978년 연방파산법은 파산법관에게서 개별 사건의 관리인 감독을 포함한 도산사건의 관리감독 기능을 분리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적으로 위 관리감독 기능을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 연방관리관(UST)에게로 이전하였고, 1986년 개정법

DIRECTOR'S GUIDELINES FOR BANKRUPTCY ADMINISTRATORS II-1 to II-3 (1993), I-3 참조, Peter C. Alexander, A Proposal to Abolish the Office of United States Trustee, 30 U. Mich. J.L. Reform 1 (1996), 9에서 재인용.

40)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미국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연구", 53 ~ 54쪽

41)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미국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연구", 54~ 55쪽

(Bankruptcy Judges, United States Trustees, and Family Farmer Bankruptcy Act of 1986)도 도산사건의 관리감독업무를 파산법관과 분리된 연방관리관에 이전하는 기본 구조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에서도 파산법관들로 하여금 연방파산관리인과 그 직원들의 감독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연방파산관리인은 사건 관리차원에서 법원을 보조하기 위해 파산법원장(Chief Judge)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연방파산관리인은 선임권자인 연방항소법원에 회계 등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통해 사무소 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받게 되고,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 연방항소법원에 그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여야 한다. 또한 연방사법회의(JCUS)에 사건접수상황, 처리현황, 남용사례 적발내용과 건수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방파산관리인은 연방관리관과 달리 행정부 내 어떠한 부서에도 보고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행정부의 지휘·감독을 받지도 아니한다.

Ⅳ. 소속과 지위

연방사법회의(JCUS)는 연방파산관리인을 "사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非)사법 공무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연방파산관리인은 사법부 소속으로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임명되고 연방항소법원의 감독을 받지만, 도산사건을 담당하는 파산법원이나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는 독립된 지위에 있다.[42]

Ⅴ. 기능과 역할

연방파산관리인의 기능과 역할은 대체로 연방관리관과 유사하다. 앨라배마 주 북부지역 연방파산관리인 웹사이트에서는 연방파산관리인의 기능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43]

---

42) 강선명, "미국 파산절차 실무", 법조 제53권 제5호(통권 제572호), 법조협회(2004. 5.), 227쪽
43) 앨라배마 주 북부지역 BA 웹사이트, "United States Bankruptcy Administrator -Northern District of

✔ 연방파산관리인 제도는 연방사법제도의 하나로, 앨라배마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6개 연방사법지역에서 연방관리관 제도를 대신한다. 연방파산관리인은 재단 관리를 감시하고, 관리인 기타 수탁자를 감독한다. 연방파산관리인은 사법부 내의 독립적이고 비사법적인 공무원으로, 전일제(full time)로 근무하고, 파산법원, 연방지방법원이나 그 소속 직원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 앨라배마 북부지역의 연방파산관리인은 제11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임명되어 5년의 임기로 활동하고, 재임명될 수 있다.
✔ 도산 재단에 대한 감시 기능과 관련한 연방파산관리인의 업무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도산사건의 모든 관리인들에 대한 감독
  - 모든 제11장 채무자들에 대한 감독
  - 범죄로 의심되는 행위에 관하여 연방검사 및 연방수사국(FBI)에 수사 의뢰
  - 도산사건 이슈와 관련하여 파산법원, 연방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에 출석
  - 전문가 고용, 보수 신청 검토 및 이의 제기
  - 도산절차 남용 의심 사건에 대한 조사와 기각신청

1990년 사법 개선법 §317(b)는 "연방파산관리인은 연방파산법의 어떤 사건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제11장 절차에서 §1121(c)에 의한 회생계획안은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연방파산관리인에게 도산절차 전반에 걸친 의견진술 권한을 인정하였다.[44]

연방사법회의 규정[45]에 의하면, 연방파산관리인은 연방파산법, 연방규칙이나 지방규칙에 따라 재단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이의, 신청, 답변, 불복, 기타 서면 제출을 하거나, 법정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연방파산관리인은 연방관리관에 인정되는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는데, 구체적으로 ① 개별 사건의 관리인(trustee) 선임에 관여하고, ② 직접 관리인(trustee)을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③ 제13장 상임관리인(standing trustee) 선임에 관여하고, ④ 제11장 절차의 채권자위원회 구성원 선임에 관여하는 권한 등을 포함한다. 연방파산관리인은 법원에 제11장 사건의 채권자위원회 후보자와 제13장 상임관리인후보자를 추천

Alabama", http://www.alnba.uscourts.gov/, (2017. 8. 17. 확인).

44) Judicial Improvements Act of 1990, Pub. L. 101-650, title III, §317(b), Dec. 1, 1990, 104 Stat. 5115 (11 U.S.C. §307 note 참조)

45) JUDICIAL CONFERENCE OF THE U.S., GUIDE TO JUDICIARY POLICY(이하 'JCUS REG.'라고 한다) §210(a) (2010).

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통상 연방파산관리인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을 채권자위원회 구성원이나 개별 사건 관리인(trustee)으로 임명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연방파산관리인이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다.[46)]

Ⅵ. 평가[47)]

1986년 미국 연방파산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된 연방관리관 제도에 대해서, 비교적 초반인 1990년도 초중반에는 "연방관리관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심각하여 사법부로 연방관리관 제도가 이관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 연방관리관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는 파산판사들을 파산사건의 감독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의회의 의도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었다. "연방관리관 제도가 유연하지 못한 관료 조직화되어 채무자들을 지원하기 보다는 오히려 서류상의 작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연방관리관 제도의 개혁 또는 연방파산관리인제도의 확장 등의 방법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최근에도 "연방관리관이 관료적 성향에 따라 관리관들에게 보고서 등의 많은 부담을 부과하는 비효율이 있다. 연방관리관의 선임 권한 때문에 관리인들이 연방관리관의 지시 등을 거부하기 어려워 관리인들의 경영상의 판단(business judgement) 재량이 위협받고 있고, 행정부 기관으로서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 유연하지 못한 중앙집권조직의 문제 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미국 파산실무는 더 이상 파산집단으로 오염되지 않고 있는 반면, 연방관리관은 사건 개입으로 인한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대형사건에서는 굳이 연방관리관이 개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대변된다는 이유 등으로, 연방관리관의 대형사건에서의 개입을 제한하고, 상설관리인에 대한 감독, 파산절차 남용에 대한 조사 기능 등을 좀 더 강조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46) 이진웅, 도산제도 개선 관련 연수보고서 (2011), 4쪽,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미국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연구", 67쪽에서 재인용

47) 강민호, 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파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2014), 42 ~ 43쪽 부분 참고

이에 관련하여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의 상대적인 장점으로는 ① 연방관리관 제도에서 관리인은 행정부와 사법부 양 쪽에 이중으로 보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에서는 사법부(담당법원 및 연방파산관리인)에게만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에서의 관리인은 연방관리관 제도에 비해 훨씬 적은 양의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결과적으로 채권자들이 파산재단에서 보다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② 행정부 소속인 연방관리관과는 달리, 사법부 소속인 연방파산관리인은 행정부가 채권자인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외관을 형성하지 아니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③ 법무부 소속인 연방관리관과 비교할 때, 연방파산관리인은 당해 지역연방항소법원에 속해 있으면서 구체적 사건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48].

반면, 연방파산관리인의 경우, 법원과 연방파산관리인의 관계로 인하여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다는 점, 법무부에 소속한 연방관리관 조직의 경우, 집행사무국 및 각 지역의 사무소를 통하여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가 용이한 반면, 연방파산관리인은 통일성이 결여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의 단점 또한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49].

48) Young-Ho Kong, "A Study on the United States Trustees and Bankruptcy Administrators Programs and a Look at the Korean Bankruptcy Administration System with a View to Establishing an Analogous Program", 비교사법 제17권 2호 (2010), 457 ~ 460쪽

49)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미국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연구", 103 ~ 104쪽

제2절 영국의 제도 : 도산실무가(insolvency practitioner) 및 도산국(the Insolvency Agency)

Ⅰ. 도산실무가 제도의 도입 배경

영국 도산법이 도산실무가 제도에 관하여 정식으로 규정한 것은 1986년 도산법 개정 이후부터였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도 도산실무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도산실무가(insolvency practitioner)라는 명칭이 사용되어 왔다.[50]

1970년대말부터 1980년대초까지 사이에 영국에서는 도산실무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였는데 이들은 도산절차에서 청산인이나 관리인 등으로 임명되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였다.[51] 이들은 채권자집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의적 회사채무 조정절차를 진행하거나 채무자 법인의 자산을 실제 가치보다 헐값에 자신들과 이해관계 있는 자들에게 매각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정한 이익을 취하였다. 심지어 이들은 채무자 법인의 자산 상태를 숨기기 위해 채무자 법인의 임원과 모의하여 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는 거짓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52]

이러한 도산실무가들의 등장으로 인하여 채무자 법인의 회생은 물론 채권자들간의 공평한 만족이라는 도산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영국에서는 1986년 도산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만이 도산실무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도산실무가로 활동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였다.

---

50) Totty, Moss & Segal, Insolvency, Volume 1, Part A: Practitioners, Chapter A2 Regulation of Insolvency Practice, Aim of the legislation, 1쪽
51) Totty, Moss & Segal, 전게, 1쪽
52) Totty, Moss & Segal, 전게, 1쪽

Ⅱ. 도산실무가의 업무 등

1. 도산실무가가 임명될 수 있는 직

영국 도산법에 따라 도산실무가는 다음과 같은 직에 임명될 수 있다.

가. 법인 채무자의 경우[53]

청산인, 임시 청산인(provisional liquidator), 관리인, 수탁관리인, 임의적 회사채무조정절차의 감독위원

나. 개인 채무자의 경우[54]

파산관재인(trustee in bankruptcy), 임시관재인(interim receiver), 스코틀랜드법상 상설 또는 임시재단의 강제관리자(trustee in sequestration), 스코트랜드법상 수탁자, 임의적 개인채무 조정절차의 감독위원, 상속재단관리인

다. 파트너쉽 채무자의 경우[55]

청산인, 임시청산인, 관리인, 조합의 수탁자, 임의적 개인채무 조정절차의 감독위원

영국의 도산절차 중 법원이 최소한의 감독 역할만 하는 절차에는 관리절차 및 수탁절차, 임의적 회사채무 조정절차, 임의적 개인채무조정절차, 임의청산절차 등이 있는데, 이러한 각 절차의 주요 기관인 관리인, 수탁관리인, 감독위원, 청산절차 등 도산실무가가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채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15년 규제완화법 개정에 따라 도산실무가는 법인 채무자의 도산실무, 개인 채무자의 도산실무 양자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완전 승인을 받을지, 어느 한 영역에서만 활동하는 것으로 부분 승인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부분 승인을 실무상

53) Insolvency Act 1986, Section 388(1).
54) Insolvency Act 1986, Section 388(2).
55) Insolvency Act 1986, Section 388(3).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56]

2. 도산실무가가 제공할 수 있는 기타 서비스

도산실무가가 개인 채무자에게 그의 재정적 상황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문서비스 제공자들과 마찬가지로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에 따라 금융규제원(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승인(consumer credit authorization)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57]

다만 도산실무가로서 도산실무가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자는 금융서비스시장법상 채무 조정, 채권 회수 등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종 자격 요건들로부터 면제되는 특권을 부여 받는다.[58]

한편 도산국의 공무원이자 법원의 직원의 지위에 있는 공적 수탁인(official receiver)의 경우 강제청산절차에서 직접 청산인 등으로 활동하게 되더라도 도산실무가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다.[59]

Ⅲ. 도산실무가에 대한 자격 승인

1. 도산실무가의 자격 요건

영국 도산법은 도산실무가의 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60]

가. 비면책 파산 채무자(an undischarged bankrupt)가 아닐 것

나. 구제명령을 받아 지불유예 상태(a moratorium under a debt relief order)에 있는 자가 아닐 것

56) Totty, Moss & Segal, 전게, Volume 1, Part A: Practitioners, Chapter A2 Regulation of Insolvency Practice, Definition of the insolvency practitioner, 3쪽
57) Totty, Moss & Segal, 전게, Volume 1, Part A: Practitioners, Chapter A2 Regulation of Insolvency Practice, Definition of the insolvency practitioner, 3쪽
58) Totty, Moss & Segal, 전게, Volume 1, Part A: Practitioners, Chapter A2 Regulation of Insolvency Practice, Definition of the insolvency practitioner, 3쪽
59) Insolvency Act 1986, Section 388(5).
60) Insolvency Act 1986, Section 390.

다. 회사 이사자격 박탈법(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에 따라 자격 박탈 명령을 받은 자(a disqualification order made or a disqualification undertaking accepted)가 아닐 것

라. 의사 결정 능력법(Mental Capacity Act)에 따른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lacking capacity)가 아닐 것

마. 파산 제한 명령(bankruptcy restrictions order)이나 채무 면책 제한 명령(debt relief restrictions order)을 받은 자가 아닐 것

영국법상 개인만이 도산실무가가 될 수 있으며, 법인은 도산실무가가 될 수 없다.[61] 따라서 만일 도산실무가 특정 법인 소속인 상태에서 관리인, 청산인 등으로 선임되었다가 해당 법인을 탈퇴한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직을 승계할 수 없다.[62]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영국 도산법 등에 따라 도산실무가로 활동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63]

2. 전문 단체

종래에는 도산실무가가 직접 장관에 의해 도산실무가 자격 승인을 받기도 하였으나,[64] 오늘날에는 등록된 전문 단체를 통해서만 도산실무가 자격 승인을 받을 수 있다.[65]

현재 국무장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전문 단체는 다음과 같다.

가. 영국 국제회계사 협회 (the Chartered Association of Certified Accountants)

나. 도산실무가 협회 (the Insolvency Practitioners Association)

---

61) Insolvency Act 1986, Section 390(1).
62) Totty, Moss & Segal, 전게, Volume 1, Part A: Practitioners, Chapter A2 Regulation of Insolvency Practice, Definition of the insolvency practitioner, 4쪽
63) Insolvency Act 1986, Section 389(1).
64) Totty, Moss & Segal, 전게, Volume 1, Part A: Practitioners, Chapter A2 Regulation of Insolvency Practice, Definition of the insolvency practitioner, 5쪽
65) Insolvency Act 1986, Section 391.

다. 잉글랜드, 웨일즈 공인 회계사 협회 (the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England and Wales)

라. 아일랜드 공인회계사 협회 (the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Ireland)

마. 스코틀랜드 공인회계사 협회 (the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of Scotland)

바. 사무변호사 협회 (the Law Society)

이러한 전문 단체들은 자격 요건을 갖춘 회원들에게 도산실무가 자격증을 수여하고 도산실무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단체별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은 조금씩 상이하다.[66] 이러한 단체는 도산실무가들로부터 도산실무가 자격 승인 신청료 및 연회비 등을 지급받아 국무장관에게 납부한다.[67]

한편 위와 같은 공인된 전문 단체는 아니지만 도산실무가들의 협회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 갱생 전문가 협회(the Association of Business Recovery Professionals 일명 "R3", 구 Law Society of Practitioners in Insolvency)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68]

Ⅳ. 공동 도산 시험

도산실무가 자격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 도산 시험 협의회(Joint Insolvency Examination Board)에서 주관하는 자격 시험인 공동 도산 시험(Joint Insolvency Examination)을 통과하여야 한다.[69] 공동 도산 시험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시험으로

66) Totty, Moss & Segal, 전게, Volume 1, Part A: Practitioners, Chapter A2 Regulation of Insolvency Practice, The recognized professional bodies, 1쪽
67) Totty, Moss & Segal, 전게, Volume 1, Part A: Practitioners, Chapter A2 Regulation of Insolvency Practice, The recognized professional bodies, 1쪽
68) Totty, Moss & Segal, 전게, Volume 1, Part A: Practitioners, Chapter A2 Regulation of Insolvency Practice, The recognized professional bodies, 2쪽
69) Totty, Moss & Segal, 전게, Volume 1, Part A: Practitioners, Chapter A2 Regulation of Insolvency Practice, Qualifying examination, 1쪽

구성되어 있다.[70]

1. 청산절차에 관한 시험

2. 관리절차, 임의청산절차, 수탁관리절차에 관한 시험

3. 개인 도산에 관한 시험

지원자는 1회에 1~3개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5년 동안 3개의 시험을 모두 통과하여야 한다.

Ⅴ. 도산실무가에 대한 관리

도산실무가와 관련된 기관에는 도산국, 기업 갱생 전문가 협회, 전문 단체 등이 있다. 이들은 도산실무가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 중 도산국의 경우, 우리나라 관리위원회 제도와 그 역할 면에서 유사점이 있다.

Ⅵ. 도산국(the Insolvency Agency)

1. 개요

도산국(the Insolvency Agency)은 영국 기업·에너지·산업 전략부(the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산하에 설치된 행정기관(executive agency) 으로서 소속 직원은 약 1,700여명이고, 영국 전역에 22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

70) Totty, Moss & Segal, 전게, Volume 1, Part A: Practitioners, Chapter A2 Regulation of Insolvency Practice, Qualifying examination, 1쪽

으며, 본부는 런던에 소재하고 있다.[71]

도산국은 도산 실무를 총괄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기업부실 관리뿐만 아니라 기업부실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처리 등 기업부실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도산국의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72]

① 파산 및 구제 명령 관리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활동을 조사하고, 이사의 비위행위에 관한 보고서 작성

③ 영업 중인 기업의 활동을 조사하여 청산 여부 및 관련 이사의 자격 박탈 여부 검토

④ 도산실무가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직접 도산절차의 기관으로 역할 수행

⑤ 국민보험기금을 통해 도산 기업의 직원에게 퇴직수당 지급

⑥ 기업 실패시 이사의 자격 박탈 여부 검토

⑦ 파산 및 제한 명령, 채무 면책 제한 명령 담당

⑧ 도산 및 퇴직수당 지급 관련 정보 제공

⑨ 정부 기관에 도산 및 퇴직수당 지급 관련 자문

⑩ 기업의 도산 관련 법규 위반 여부 수사 및 기소

⑪ 도산실무가에 대한 자격 승인 및 관리

2. 도산 윤리 규정(the Insolvency Code of Ethics)

앞서 정리하였듯이 오늘날에는 등록된 전문 단체를 통해서만 도산실무가 자격 승인을 받는 것인 원칙이다. 따라서 도산국이 직접 도산실무가 자격 승인을 담당하지는 않

71)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insolvency-service/about#who-we-are

72) Timothy, A. Barnes & Dr. Donald P.S. Macfarlane, 전게, 15쪽; 강민호, 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파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51쪽

는다. 그러나 도산국은 도산 실무를 총괄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도산실무가를 관리하고 그들의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도산국은 2008년 도산실무가들을 위한 윤리 지침으로서 도산 윤리 규정 (the Insolvency Code of Ethics)를 제정하였다. 모든 전문 단체들은 위 규정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도산실무가들은 위 규정에 구속되게 된다.

도산 윤리 규정은 도산실무가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원칙인 성실성(integrity), 공정성(objectivity), 전문가적 적격성 및 정당한 주의의무(professional competence and due care), 비밀유지의무(confidentiality), 전문가적 품위(professional behavior)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공정성이다. 즉, 도산 윤리 규정상 공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도산실무가는 편향적이거나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거나 타인의 부당한 강압 아래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도산 윤리 규정의 특징은 도산실무가로 하여금 도산절차의 기관으로 임명되기 앞서 해당 도산절차와 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있거나 도산실무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이 이해관계가 있어 이러한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될 위험이 없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특징이 있다.[73]

즉, 도산실무가의 직업적 또는 개인적 관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의 원칙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관계는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직업적 관계(Significant Professional Relationship) 내지 중대한 개인적 관계(Significant Personal Relationship)로서 도산실무가가 임명을 거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산 윤리 규정 Section H는 도산실무가가 도산절차의 기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74]

① 기존 도산절차와 관련이 없는 경우

우선 도산실무가나 그가 속한 도산실무가 법인이 최근 3년 동안 감사 관련(audit-

73) Totty, Moss & Segal, 전게, Volume 1, Part A: Practitioners, Chapter A2 Regulation of Insolvency Practice, Professional ethics, p. 1.

74) Totty, Moss & Segal, 전게, Volume 1, Part A: Practitioners, Chapter A2 Regulation of Insolvency Practice, Professional ethics, p. 1.

related) 업무를 수행한 경우 중대한 직업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원에 의한 임의청산절차를 제외하고는 기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5]

한편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지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공정성의 원칙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산실무가로 하여금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존재하는지 스스로 검토해보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76]

반면 도산실무가가 채권자들에 의해 채무자 법인에 대한 조사 회계인으로 임명되었던 경우에는 도산실무가가 속한 법인이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들과 고객 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산실무가가 채무자 법인의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채무자 법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다면 채무자 법인에 대한 도산절차에서 기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중대한 직업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77]

② 기존 도산절차와 관련된 경우

도산실무가가 채무자 법인에 대한 수탁관리절차에서 법원에 의해 임명된 경우가 아닌 이상 수탁관리인이나 수탁인으로 임명되었던 경우 중대한 직업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기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78]

한편 도산실무가가 채무자 법인에 대한 임의적 회사채무 조정절차에서 감독위원으로 임명되었던 경우에는 관리인이나 청산인으로 임명되더라도 중대한 직업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채무자 법인에 대한 관리절차에서 관리인으로 임명되었던 경우 청산인으로 임명되는 것도 허용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도산실무가로 하여금 공정성의 원칙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는지 스스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75) Insolvency Code of Ethics, Section H, Part 1.
76) Insolvency Code of Ethics, Section H, Part 1.
77) Insolvency Code of Ethics, Section H, Part 1.
78) Insolvency Code of Ethics, Section H, Part 2.

Ⅶ. 기업 갱생 전문가 협회(the Association of Business Recovery Professionals)

1. 개요

영국의 도산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기관은 바로 기업 갱생 전문가 협회다. 이러한 기업 갱생 전문가 협회는 직접 도산실무가에 대한 자격 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회원인 도산실무가들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활동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2. 도산 실무 진술서(the Statement of Insolvency Practice)

기업 갱생 전문가 협회는 도산실무가들을 위해 도산 실무 진술서(the Statement of Insolvency Practice)라는 실무 가이드 라인을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 가이드 라인은 전술한 전문 단체들이 연합하여 1999년 설립한 공동 도산 위원회(the Joint Insolvency Committee) 및 도산국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각 전문 단체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도산 실무 진술서 그 자체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지만 도산실무가들의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사실상 법률의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산 실무 진술서에서 벗어나는 도산실무가의 활동은 전문 단체의 감시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 단체로부터 각종 규제 내지 징계를 받게 된다.

도산 실무 진술서는 관리절차, 임의적 회사채무조정절차, 임의청산절차, 강제청산절차 등 각 도산절차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예컨대 도산 실무 진술서는 도산절차의 기관으로 임명된 도산실무가가 지급받는 보수에 관하여 30여 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도산 실무 진술서는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개정, 폐지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간된 도산 실무서는 총 17종 33개가 발간되었으며 각각의 제목은 아래와 같다.

번호	명칭
SIP 1	수탁관리인의 회사 업무 기록에 관한 책임 (2011. 5. 2.까지 적용) An administrative receiver's responsibility for the company's records (effective until 2 May 2011)
SIP 1	도산 실무 진술서 소개 (2015. 10. 1.까지 적용) An introduction to statements of insolvency practice (effective until 1 October 2015)
SIP 1	도산 실무 진술서 소개 (2015. 10. 1.부터 적용) An introduction to statements of insolvency practice (effective from 1 October 2015)
SIP 2	도산 법인의 업무에 관한 청산인의 조사 (2011. 5. 2.까지 적용) A liquidator's investigation into the affairs of an insolvent company (effective until 2 May 2011)
SIP 2	관리절차 및 도산 청산절차 기관에 의한 조사 (2016. 4. 6.까지 적용) Investigations by office holders in administrations and insolvent liquidations (effective until 6 April 2016)
SIP 2	관리절차 및 도산 청산절차 기관에 의한 조사 (2016. 4. 6.까지 적용) Investigations by office holders in administrations and insolvent liquidations (effective until 6 April 2016)
SIP 3	임의적 채무조정 절차 (2017. 4. 1.부터 적용) Voluntary arrangements. (Effective 1 April 2007)
SIP 3.1	임의적 개인 채무조정 절차 (2014. 7. 1.부터 적용) Individual voluntary arrangements (Effective 1 July 2014)
SIP 3.2	임의적 법인 채무조정 절차 (2014. 7. 1.부터 적용) Individual voluntary arrangements (Effective 1 July 2014)
SIP 4	이사의 실격 Disqualification of directors
SIP 6	도산 절차에서 의사결정 Decision making in insolvency proceedings
SIP 6	지침 노트 Guidance notes
SIP 6	도산절차에서 간주된 동의 및 의사결정 절차 Deemed consent and decision procedures in insolvency proceedings
SIP 7	도산절차 기관의 수령 지출 대장 준비 (2011. 5. 2.까지 적용) Preparation of insolvency office holders' receipts and payments accounts (effective until 2 May 2011)
SIP 7	도산 절차에서 금융 정보의 제시 (2011. 5. 2.까지 적용)
SIP 8	도산법 제98조에 따른 채권자 회의의 소집 및 진행 (2017. 4. 6.까지 적용) Summoning and holding meetings of creditors convened pursuant to section 98 of the Insolvency Act 1986 (effective until 6 April 2017). Tech 21/01
SIP 9	도산절차 기관의 보수 (2010. 4. 5.까지 적용) Remuneration of insolvency office holders (effective until 5 April 2010)

번호	명칭
SIP 9	도산절차 기관의 보수 (2010. 4. 6.부터 적용) Remuneration of insolvency office holders (effective from 6 April 2010)
SIP 9	도산절차 기관 및 관련자들에 대한 지급 (2015. 12. 1.까지 적용) Payments to insolvency office holders and their associates (effective until 1 December 2015)
SIP 9	도산절차 기관 및 관련자들에 대한 지급 (2015. 12. 1.부터 적용) Payments to insolvency office holders and their associates (effective from 1 December 2015)
SIP 10	위임 형식 (2017. 4. 6.까지 적용) Proxy forms (effective until 6 April 2017)
SIP 11	공식적 도산절차 임명에서 자금 관리 (2018. 1. 1.까지 적용) The handling of funds in formal insolvency appointments (effective until 1 January 2018)
SIP 11	공식적 도산절차 임명에서 자금 관리 (2018. 1. 1.부터 적용) The handling of funds in formal insolvency appointments (effective from 1 January 2018)
SIP 12	공식적 도산절차에서 각종 회의의 기록 (2017. 4. 6.까지 적용) Records of meeting in formal insolvency proceedings. Effective (effective until 6 April 2017)
SIP 13	도산 법인 이사에 의한 자산 취득 (2016. 12. 1.까지 적용) Acquisition of assets of insolvent companies by directors (effective until 1 December 2016)
SIP 13	도산 절차에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자산 처분 (2016. 12. 1.부터 적용) Disposal of assets to connected parties in an insolvency process (effective from 1 December 2016)
SIP 14	우선 채권자들에 대한 수탁인의 책임 A receiver's responsibility to preferential creditors. Tech 05/99
SIP 15	공식적 도산절차에서 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정보 제공 (2017. 3. 1.까지 적용) Report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on their functions to committees in formal insolvencies (effective until 1 March 2017).
SIP 15	공식 도산절차에서 위원회 및 위원들에 대한 보고 및 정보 제공 (2017. 3. 1.부터 적용) Report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on their functions to committees in formal insolvencies (effective from 1 March 2017).
SIP 16	관리절차에서 Pre-packaged Sales (2009. 1. 1.부터 적용) Pre-packaged sales in administrations (effective from 1 January 2015)
SIP 16	관리절차에서 Pre-packaged Sales (2015. 11. 1.까지 적용) Pre-packaged sales in administrations (effective until 1 November 2015)
SIP 16	관리절차에서 Pre-packaged Sales (2015. 11. 1.부터 적용) Pre-packaged sales in administrations (effective until 1 November 2015)
SIP 17	수탁관리인의 업무 기록에 관한 책임 (2011. 5. 2.부터 적용) An administrative receiver's responsibility for the company's records (effective from 2 May 2011)

Ⅷ. 전문 단체

1. 개요

전문 단체는 도산실무가에 대한 자격 승인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자격 승인인 공동 도산 시험을 주관하고, 도산실무가의 자격 요건을 심사한다.

즉, 도산실무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단체에 소속되어 자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산실무가 협회(the Insolvency Practitioners Association)을 제외한 나머지 전문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회계사 협회로서 도산실무가 협회로서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전문 단체는 소속 회원인 도산실무가의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권을 행사한다.

2. 도산실무가의 보증 제공(performance security) 및 위약금 부담(penalty)

도산실무가가 특정한 사건에서 도산실무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영국 도산실무가 규정 2005(Insolvency Practitioners Regulation 2005)에 따라 자신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performance security)을 자신이 속한 전문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79]

만일 도산실무가가 이러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고 활동할 경우 도산법에 위반하여 도산실무가로 활동한 것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80] 보증은 도산실무가가 도산절차의 기관으로 임명될 당시 국무부장관이 승인한 형식에 따라 유효하게 작성된 문서 또는 전자문서여야 한다.[81]

도산실무가는 그가 임명된 각 도산절차별로 정해진 위약금을 부담한다. 예컨대, 도산실무가가 임의적 채무 조정절차의 지명자 또는 감독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그는 채무 조정절차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액 상당 금액에 관하여 위약금을 부담한다.[82]

---

79) Insolvency Practitioners Regulation 2005, Section 2, para. 10.
80) Insolvency Act 1986, Section 390(1).
81) Insolvency Practitioners Regulation 2005, Section 2, para. 3.
82) Insolvency Practitioners Regulation 2005, Section 2, para. 3.

보증은 도산실무가의 기만적 또는 부정직한 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들의 손해를 부보하는 것이므로, 보증 금액은 도산실무가가 각 도산절차별로 부담한 특별 위약금(specific penalty)을 합산한 금액을 상회하여야 한다.[83] 특히 보증 금액이 위와 같은 손해를 담보하는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증은 위와 같은 특별 위약금의 합산액에 25만 파운드 상당의 일반 위약금(general penalty)을 더한 금액이어야 한다.[84]

제3절 독일의 제도 : 사법보좌관 제도

Ⅰ. 독일 도산절차의 개관[85]

1999년에 시행된 독일의 개정 도산법(Insolvenzordnung: InsO)은 도산절차가 단일한 절차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InsO는 2011년 기업회생의 간이화를 위한 법률(Gesetz zur weiteren Erleichterung der Sanierung von Unternehmen:ESUG)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정되었다. 독일 도산법은 단일한 절차의 진행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회생형 절차로서의 도산계획절차, DIP를 인정하는 자기관리절차, 소비자도산절차 등 특별한 절차들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1. 일반적인 도산 절차의 진행

도산절차의 신청은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개시 요건이 충족되면, 파산법원은 절차를 개시하고 도산관재인을 임명하며 채권자집회(보고기일)를 소집한다. 도산관재인은 절차 개시와 함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게 된

83) Insolvency Practitioners Regulation 2005, Section 2, para. 5.
84) Insolvency Practitioners Regulation 2005, Section 2, para. 5.
85) 강민호, 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파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2014), 53쪽 이하 참고

다. 채권자들은 최초 채권자집회에서 도산관재인을 교체할 수도 있고, 채무자를 청산할지 아니면 도산계획을 통하여 회생하도록 할지를 투표로 결정한다. 도산계획이 제출된 경우 채권자들은 이에 대하여 다시 투표를 하고, 최초 채권자집회에서 청산을 결정하거나 도산계획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를 청산하게 된다.

2. 자기관리절차(Eigenverwaltung)[86]

독일 도산절차에서는 도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자기관리절차에서는 기존 경영자가 계속하여 관리·처분권을 가질 수 있다. 개정 전 InsO도자기관리절차를 규정하였으나,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ESUG는 그 요건을 완화하였다.

채무자가 자기관리를 신청하고 자기관리명령이 채권자에게 손해가 되는 사정이 없을 경우, 도산법원은 자기관리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자기관리명령이 내려지면, 기존경영자가 도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며, 도산관재인을 대신하여 감독인(Sachwalter)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조사하고 채무자의 영업 등을 감시하게 된다.

3. 소비자도산절차[87]

독일 도산법상 개인 채무자는 법정 외의 채무정리절차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채무정리에 실패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면서 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위 증명과 함께 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에 의하여 채무정리계획절차가 진행되는데, 법원은 채무정리계획을 채권자들에게 송달하고, 채권자들이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과반수에 이르지 않고 법원이 일부 채권자의 이의를 동의로 대체한 경우에는 채무정리계획에 따라 채권이 정리되어 절차가 종결된다.

채무정리계획을 과반수 채권자들이 거부한 경우, 법원이 도산관재인 대신 수탁자를

86) 김경욱, "독일 도산법상 자기관리제도의 개정과 보호막절차의 도입", 경영법률 23권 1호, 한국경영법률학회(2013), 398쪽 이하 참고

87) 정문경, "법인회생절차에서의 채권자 참여", 도산법연구 제3권 제1호,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2012), 548-551쪽

선임하고 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열리지 아니하는 간이도산절차가 진행된다. 간이도산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잔여채무 면책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Ⅱ. 도산법원(Insolvenzgericht) 및 사법보좌관의 역할

독일의 사법보좌관법상 사법보좌관의 업무는 크게 ① 전속적 업무, ② 유보적 위임업무, ③ 개별위임업무로 구분된다. 우선 ① 전속적 업무는 법관에 대한 유보 없이 완전히 사법보좌관의 관할권에 속하는 업무로서 사법보좌관의 관할권이 일반적으로 추정된다. 법인의 신청절차와 법인법에 따른 각종 조치 등 법인관련사건, 민법상의 선서에 갈음하는 보증(1969/70년 제1차 사법보좌관법 개정법에 의해 일반적으로 개시보증이 선서에 갈음하는 보증으로 바뀐 후 사법보좌관에게 이 업무를 맡길 수 있게 되었다). 물건의 상태와 가액의 확정을 위한 감정인의 선임, 보관자의 선임과 보수 확정 등 물건의 검사와 보관에 관한 업무, 압류물의 매도방식에 관한 결정(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쟁송사건이며, 이 결정은 기판력이 발생한다). 의장등록사건, 부부재산약정사건, 문서작성업무, 실종사건, 토지등기사건, 선박·항공기의 등록, 부동산집행, 분배절차 등이다. 다음으로 ② 유보적 위임업무는 전 영역을 사법보좌관에게 위임하나, 법관이 개별적으로 직접 사안을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유보된 경우이다. 여기에서도 원칙적으로 사법보좌관의 관할권이 추정되며 법관의 유보는 예외적인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법관의 유보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는 예컨대, 비송사건 특히 후견사건, 유산사건, 도산절차 등이 있다. ③ 개별위임업무는 원칙적으로 전 영역이 법관에게 맡겨져 있으나, 법관이 사법보좌관에게 개별적으로 그 업무 처리를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사건 등 대부분의 쟁송사건이 여기에 속한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사법보좌관의 관할권이 추정되지 않는다. 민사분쟁사건, 벌금사건, 특허법원절차, 의사표시의 조서 작성, 법률상담구조절차, 부담액확정절차 등이 이에 해당한다[88].

이상과 같이 독일 사법보좌관법상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도산절차 관련 업무는 소위 유보적 위임업무로서 업무의 전 영역을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

88)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선주, 독일 사법보좌관의 지위와 제3차 사법보좌관법 개정법, 비교사법 제8권 1호, 625쪽 이하

법관이 개별적으로 사안을 담당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도산사건은 지방법원(Landgerichte) 산하의 구법원(Amtsgerichte)에서 관장하는데, 도산법원은 구법원의 한 부(division)이다. 도산법원은 적어도 한 명의 판사와 한 명 이상의 사법보좌관(Rechtspfleger)으로 구성되는데, 사법보좌관은 법원의 공무원으로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는 아니지만, 도산절차 개시, 도산관재인 임명 등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도산절차 업무는 사법보좌관에 의해서 수행된다.[89]

채권자집회나 대형사건(mega case)의 절차도 사법보좌관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독일 판사들과 도산관재인들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 판사들 중에서는 실질적인 도산사건의 진행을 사법보좌관이 아니라 판사들이 관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도산관재인들도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절차 개시 전에는 판사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는데, 개시 이후에는 사법보좌관과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판사로부터 조언을 받기 어려운 불편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90]

도산법원은 전문법원으로서 구상되었으나, 도산법원의 판사들은 도산사건 이외에도 형사나 민사사건을 처리하였다. 1999년 도산법 개정 이후 도산사건에의 집중을 위해 도산법원의 관할을 확대하였고, 이와 함께 도산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되어 전문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독일의 도산법원의 역할은 절차적인 역할이 강하고, 도산재산의 경영이나 관련소송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경영 판단이나 자산의 환가는 도산관재인이 수행하고 중요한 사항에는 채권자들이 관여하며 채권 관련 분쟁, 부인권 관련 부분 등도 도산법원이 아닌 일반 민사법원 등에서 처리한다.

89) Axel Flessner, "National report for Germany", Principles of European Insolvency Law, Kluwer Legal Publishers(2003), 329 ~ 330쪽

90) 강민호, 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파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2014), 55쪽

Ⅲ. 도산관재인의 선임과 감독[91)]

독일 도산절차에서 도산관재인(자기관리절차에서의 감독인, 간이도산절차에서의 수탁인을 포함)은 절차의 주요한 주체이다.

도산관재인은 법원이 도산절차의 개시를 결정할 때 선임되고 채권자집회에서 교체될 수 있으나 실제로 교체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도산관재인의 자격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조항만이 있으며, 통상은 법원이 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도산관재인으로 선임된다.

전국적으로 명망이 있는 도산전문가에게는 큰 기업의 도산사건을 맡긴다. 독일 도산절차는 채권자 주도의 절차라고 평가되고 채권자들이 절차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도산관재인이 채권자집회의 결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절차의 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도산관재인의 선임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고, 큰 기업의 도산사건에서는 채권자들이 법원의 도산관재인 선임에 관여하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Ⅳ. 평가

독일의 사법보좌관제도는 우리의 사법보좌관제도와 가장 유사한 제도라고 평가된다. 즉, 사법보좌관은 법관과는 구분되는 법원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부수적·공증적 성격의 법원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92)].

앞서 살펴 보았듯이 사법보좌관에 의해 도산 절차의 대부분이 진행되는 구조는 독일의 특유한 제도라고 평가되는데, 이는 독일에서 사법보좌관의 질적 수준이나 전문성이 법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독일에서 사법보좌관의 양성은 1957년 사법보좌관법에서 연방법 차원에서 사법보좌관의 최소 요건으로서 최

91) 강민호, 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파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2014), 56쪽
92) 정준영, 사법보좌관제도와 사법보좌관의 업무, 민사집행법연구, 2권, 213쪽

소한 3년의 예비기간과 최소한 9개월의 전문지식 습득과정을 규정한 이래, 현재는 사법보좌관법 제2조에 따라 사법보좌관 양성 전문대학(Fachhochschule) 등에서 3년의 연수과정을 거치고 사법보좌관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사법보좌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문대학의 입학 자격은 대학 입학 자격 시험(Abitur) 합격자나 이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춘 자 내지 중위직 법원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사법보좌관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능력과 인성을 인정받은 자이다.

독일의 사법보좌관 양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Baden-Wurttemberg주의 예에서 살펴보면, 우선 사법보좌관 양성 전문대학에서 3년 과정의 교육을 받는데, 이는 12개월 동안 강의와 연습 등 이론 중심 과정(1주일간 구법원에서의 강의 포함), 13개월 동안 구법원과 공증사무소에서 실습, 9개월 동안 이론 중심 과정(그동안의 실습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고급 이론 과정), 2개월 동안 검찰 실습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전문대학에서의 교육 과정은 사법보좌관 시험으로 종결되는데, 합격자에게는 사법보좌관 학사증(Diplom-Rechtspfleger)이 수여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법보좌관이 양성됨에 따라 그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문을 표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고, 종래에 사법보좌관에게 부과되었던 광범위한 제출의무도 당연히 제한되었다. 이처럼 법관에 대한 제출의무의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이제 독일의 사법보좌관은 법관에 반하는 견해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으며, 또한 자주 접하는 일상적인 사례들에 있어서 독자적인 해결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고 평가된다[93].

앞서과 같이 사법보좌관이 도산 절차 관련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일부 비판적인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상과 같은 독일 사법보좌관들의 경우 업무 능력 면에서 고도의 교육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는 관계로 특별한 제도 개선 없이 현재의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사법보좌관 제도와 독일의 사법보좌관 제도의 유사성이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관리위원회 제도의 개선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사법보좌관 제도와 같이 우리나라 사법보좌관이 도산 절차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 또

93) 정선주, 독일 사법보좌관의 지위와 제3차 사법보좌관법 개정법, 비교사법 제8권 1호, 613쪽 이하

한 검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① 먼저 우리나라 사법보좌관 제도의 근거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현재 채무자회생법상 관리위원회의 업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사법보좌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② 다음으로는 도산법 및 도산 절차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 사법보좌관들을 도산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해 나가는 과정 또한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설립되었고, 향후 회생법원을 통한 전문법관 양성이 계획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인 사법보좌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 만약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는 경우, 현재 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분야 중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분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4절 일본의 제도 : 회사갱생절차 및 민사재생절차의 감독위원 제도

Ⅰ. 일본의 법적 도산절차의 개요[94)]

우리나라의 관리위원회 제도가 상당한 유사점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감독위원 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 현재 구축된 일본의 법적 도산절차의 개요에 대하여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2000년대 이전의 도산절차

2000. 4. 1. 시행된 민사재생법을 시작으로 2000년대 들어 일본의 법적 도산절차는

94) 이하의 내용은 櫻井 孝一, 加藤 哲夫, 西口 元 (編集) , 倒産処理法制の理論と実務 (別冊金融 · 商事判例) , 経済法令研究会 (2006. 8.)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대대적인 개정 작업을 단행하였다.

2000년대에 진행된 일련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의 일본의 법적 도산처리절차는 1922년 구 파산법(1952년 개정에서 면책제도 도입) 및 화의법, 1938년 상법 개정에 의한 회사정리·특별청산 및 1952년의 회사갱생법(1967년 개정)이라는 다섯 가지 절차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각 절차는 제정시기가 서로 다르고 각각의 시대적 배경 하에서 저마다 다른 계통의 법을 참조하여 만들어졌던 만큼 각 절차가 하나의 도산처리법제로서 체계적으로 통일성·일관성을 지닌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파산·특별청산이라는 청산형 절차, 화의·회사정리·회사갱생이라는 재건형 절차, 나아가 청산형·재건형 두 절차를 포함한 도산처리절차 전체를 일관적이고 통일된 도산처리법제로 개선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종전의 의견에 따라 2000년대에 들어 각 법적 도산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파산·민사재생·회사갱생을 주축으로 하는 통일된 도산처리법제가 탄생하였다.

제정된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우선 시대적 요청에 따라 민사재생법이 화의법의 결함을 보완하고 회사갱생절차의 방식 등을 참고 삼아 새로운 재건형 절차의 기본법으로 제정되었고, 그 다음 신 회사갱생법이 민사재생절차 방식을 참조하여 기존 절차의 전면 재검토 하에 새로운 형태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신 파산법이 민사재생법 및 신 회사갱생법에 담긴 절차규정을 흡수하고 민사재생법 및 신 회사갱생법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경제사회에 걸맞은 도산실체법의 수정을 통해 성립하였으며, 그 후 신 회사법 제정에 따라 신 청산절차가 만들어지면서 신 도산처리법제가 정비되었다.

2. 민사재생절차(2000. 4. 1. 민사재생법 시행)

2000년대에 진행된 도산법제 개정의 가장 큰 성과가 바로 민사재생법의 제정이다. 이 절차는 중소기업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재건형 도산처리절차로서, 기존 화의법의 결함을 보완하고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절차내용을 전면적으로 정비·강화하여 모든 법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건형 도산처리절차의 기본법(일반법)으로서 제정되었다.

민사재생법은 화의법처럼 단순한 파산예방이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사업 및 경제생활의 재건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인 만큼 새로운 도산처리법제의 하나의 뼈대로서 큰 의의를 갖는다.

민사재생절차의 구조 내지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절차개시원인을 완화하고 절차개시의 조기화를 도모한 점

② 보전처분을 강화하고 그 남용방지조치를 마련한 점

③ 절차가 개시되어도 재생채무자의 업무수행·재산관리처분권한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는 점(이른바 DIP형 절차)

④ 절차상 기관의 다양화·임의화, 채권자집회의 임의화와 재생계획안에 관하여 서면결의제도 도입, 채권자의 의견반영 등을 위한 대리위원 및 채권자위원회제도 도입

⑤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 중지명령 및 담보권소멸제도 도입

⑥ 부인권제도 및 임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사정제도 채택

⑦ 절차개시 후 영업 등의 양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에 의한 것으로 하고, 채무초과상태인 주식회사에 관하여 영업양도 및 감자에 관한 상법 특례 설정

⑧ 신고채권의 서면에 의한 조사제도 도입 및 이의 있는 채권 확정에 대한 사정절차 도입

⑨ 재생계획안의 제출시기 유연화 및 가결요건 완화

⑩ 재생계획의 이행확보를 위한 감독위원의 수행 감독, 불이행시의 회생채권자표에 근거한 강제집행 허용, 불이행에 의한 재생계획의 취소

⑪ 절차의 효율화·신속화를 위해 재생채권의 조사·확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간이재생, 회생채권의 조사·확정 절차 및 재생계획안의 결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동의회생제도 도입

⑫ 그 밖에 모·자회사 등의 도산사건 관련 관할규정, 사건관계문서열람 등의 절차정비, 외국도산처리절차가 있는 경우의 특칙

3. 회사갱생절차(2003. 4. 1. 신 회사갱생법 시행)

1952년에 제정된 회사갱생법은 1967년에 대폭 개정되었으나 민사재생법 제정·시행과 그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 절차의 신속화·합리화에 대한 요청, 새롭게 등장한 경제거래현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갱생절차전반에 걸친 검토가 이루어졌고 그 전면개정으로서 2003. 4. 1. 신 회사갱생법이 제정·시행되었다.

갱생절차는 법원에 의한 선임된 관재인이 재산의 관리처분권, 업무집행을 전담하고, 쌍방미이행계약의 해제권을 가지며, 담보권을 절차에 편입시키고, 갱생계획에 의해 회사분할, 합병, 주식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궁극의 재건형 도산절차로서 우리나라의 회생절차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

재건형 도산절차인 민사재생절차와의 차이점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①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갱생절차와 달리 재생절차는 사업자로서의 자연인 및 법인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법인 중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쌍방이 포함된다는 점(이러한 점에서 일본에서는 민사재생절차를 보다 일반적인 재건형 도산절차라고 평가하고 있다), ② 민사재생절차의 경우, 경영진의 교체없이 종전 경영진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인 반면, 회사갱생절차의 경우 법원에 의해 관재인이 임명된다는 점(물론, 최근 기존의 경영자가 관재인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음), ③ 민사재생절차의 경우 주주 구성의 변동이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주주의 지위에 변동이 생기지 않으나, 회생갱생절차의 경우 감자 등의 조치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④ 별제권이 인정되는 민사재생절차와는 달리, 갱생회사의 특정재산상의 담보권은 갱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또는 개시결정의 효과로 그 실행기능이 제한되고 절차상으로는 그 피담보채권이 갱생담보권으로서 갱생채권 등 다른 권리에 대한 우선성을 보장받으면서 갱생계획에 근거해 집단적 만족을 얻을 권리로 전환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구 회사갱생법과 비교한 신 회사갱생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할규정의 확충, 특히 도쿄지방재판소·오사카지방재판소의 경합관할 신설

② 갱생절차 종료 등에 의한 파산선고 전 보전처분제도 마련(2004년 신 파산법 제정

에 따른 신 회사갱생법 개정 253조)

③ 사건관계문서 열람 등의 절차 정비

④ 갱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노동조합 등의 의견청취

⑤ 포괄적 금지명령제도 도입

⑥ 갱생절차개시요건의 완화

⑦ 갱생계획인가 전 영업양도규정 마련

⑧ 이사 등 관재인에 대한 선임요건 명확화

⑨ 재산평가·담보권평가기준의 명확화

⑩ 담보권소멸청구제도 도입

⑪ 관계인집회의 임의화

⑫ 갱생채권자위원회 등의 제도 도입

⑬ 대리위원제도의 강화 - 대리위원의 선임권고 및 법원에 의한 선임제도 마련

⑭ 갱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절차 합리화 - 서면에 의한 조사·사정 등의 제도 도입 및 담보목적재산의 가격결정절차 마련

⑮ 갱생계획상의 채무변제기한 단축

⑯ 갱생계획에 의한 발행사채 상환기한 자유화

⑰ 갱생계획의 제출시기 한정

⑱ 갱생계획안 결의시의 서면 등 투표제도 도입

⑲ 사채권자의 절차참가규정 정비

⑳ 갱생계획안의 가결요건 완화

㉑ 갱생절차의 종결 조기화

4. 파산절차(2005. 1. 1. 개정 파산법 시행)

개정 전 구 파산법은 이용성·효율성의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오늘날 사회경제적 거래현상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도산사건처리의 신속화·유연화·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파산절차 전반에 걸친 검토, 소비자파산상 면책절차 등에 대한 정비, 나아가 거래관계의 복잡화·다양화에 따른 계약관계규정과 부인권·상계제한규정 등의 도산실체법 정비를 비롯하여 2000년대 이후 진행된 도산처리법제의 전면수정·검토의 실질적인 마무리작업으로서 신 파산법이 제정되었다.

신 파산법의 개요 내지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관할규율의 확충, 특히 대규모 파산사건의 경합관할 신설 등

② 사건관계문서열람 등의 절차 정비

③ 보전처분의 강화 – 포괄적 금지명령·보전관리명령제도 도입, 부인권을 위한 보전처분 마련

④ 파산자의 설명의무 강화, 파산자의 중요재산공개의무 신설

⑤ 채권자대위소송의 중단·수계 규정 정비

⑥ 파산채권의 신고시기 제한

⑦ 파산채권 조사·확정절차의 합리화 – 서면에 의한 조사·사정 등의 제도 도입

⑧ 채권자집회의 임의화, 서면 등 투표제도 도입

⑨ 대리위원·채권자위원회제도 도입

⑩ 법인임원의 책임추궁제도 도입

⑪ 파산재단환가에 관하여 임의매각에 따른 담보권소멸제도 도입, 상사유치권 소멸제도 마련

⑫ 배당에 관하여 간이배당·동의배당제도의 신설

⑬ 도산실체법 관련

(ⅰ) 쌍무계약관계에 관하여 계속적 공급계약규정 신설, 임차인 파산에 관한 민법 621조 삭제, 임대인 파산처리의 명확화, 차임 선급 등의 효력제한규정 삭제, 시세 있는 상품거래취급의 명확화 등

(ⅱ) 양도담보목적재산 환취제한규정(구 파산법 88조) 삭제

(ⅲ) 부인 및 상계제한규정의 대폭 수정과 그 관계규정 정비

(ⅳ) 노동채권의 일부 재단 채권화, 우선권 부분의 변제허가제도 마련

(ⅴ) 조세채권의 재단채권부분 한정 등 그 취급 정비

(ⅵ) 재단채권의 순위 명확화

(ⅶ) 약정후순위파산채권제도 마련

(ⅷ)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의 파산채권자 절차참가규정 정비

⑭ 개인파산·면책 관련

(ⅰ) 자유재산범위 확대

(ⅱ) 면책제도 정비 – 파산절차와 면책절차의 일원화, 면책절차 중 강제집행 등의 금지, 비면책채권 확대 등

⑮ 부인등기제도 정비 등

⑯ 파산범죄규정 정비

⑰ 구법상의 감사위원·소파산·강제화의 폐지 등

5. 신 회사법상의 특별청산절차(2006. 5. 1. 신 회사법 시행)

신 특별청산절차는 일반 청산절차와 달리 특별히 법원의 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는 엄격한 청산절차로서 절차의 신속화·합리화 및 절차의 공평성·투명성 확보라는 관점에

서 기존 절차를 개선시킨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할규정의 확충 – 신 법인 등의 도산사건 계속과 자회사 등의 특별청산사건 관련 관할 마련

② 특별청산개시신청에 관하여 취하제한규정 도입, 기존의 직권개시·감독관청의 통고 및 절차비용의 가지급제도 폐지

③ 그 외 절차중지명령제도 정비

④ 특별청산개시조건(신청기각사유) 정비

⑤ 협정채권으로부터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 등의 제외, 그 규정의 정비

⑥ 상계금지규정 정비

⑦ 청산인해임신청권의 채권자·주주에 대한 부여

⑧ 감독위원·조사위원에 관한 규정 정비

⑨ 청산회사의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 정비

⑩ 임원 등의 책임면제취소제도의 근본적 수정

⑪ 채권자집회에 관한 규정 정비

⑫ 협정 가결요건의 완화 및 불인가요건 명확화

⑬ 파산절차로의 이행규정 정비

⑭ 사건관련문서 열람 등 절차 정비

Ⅱ. 일본 회사갱생절차의 감독위원 제도[95]

1. 제도의 개요

일본의 회사갱생절차를 관장하는 법원은 갱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갱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갱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기간 동안 감독위원[96]에 의한 감독을 명하는 처분(감독명령)을 할 수 있다(회사갱생법 제35조 제1항).

보전관리명령이 발령되는 경우(회사갱생법 제30조 제1항)를 제외하고 갱생절차개시결정까지는 개시 전 회사의 기관이 사업경영권 및 재산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데(회사갱생법 제72조 제1항 참조), 감독위원은 그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갱생절차의 기관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

감독위원은 법원에 의해 선임되고(회사갱생법 제35조 제1, 2항),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회사갱생법 제37조, 제68조 제1항), 법원에 대한 보고의무를 지지만(회사갱생법 제37조) 법원의 보조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 직권을 행사하는 갱생절차의 기관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단, 민사재생절차의 감독위원(민사재생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은 감독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생절차개시 후에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비하여 회사갱생절차의 감독위원은 갱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기간에 한해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다.

감독명령이 발령되면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시 전 회사는 감독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는 점에서(회사갱생법 제35조 제2항) 그 권한의 제약을 받는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사업경영권이나 재산관리처분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보전관리인을 임명하는 보전관리명령과 구별된다.

---

95) 이하의 내용은 伊藤眞,「会社更生法」,(有斐閣, 2012), 83쪽 이하를 주로 참고하였다.

96) 구 회사갱생법 39조 1항 후단 및 42조에서는 감독원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으나 현행 회사갱생법에서의 감독위원과 기본적 성질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된다. 단, 감독원은 1명밖에 선임할 수 없었으나 감독위원은 법인이나 복수의 개인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회사갱생법 제35조 제2항, 제38조, 제67조 제2항), 감독위원은 이사 등이 관재인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자인지에 대해 조사를 명할 수 있다는 점(회사갱생법 제37조) 등의 차이가 있다.

2. 감독명령의 발령

법원은 갱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기간 동안 갱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명령을 발령한다(회사갱생법 제35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필요성이란 갱생절차의 목적에 비추어 개시 전 회사 기관의 사업경영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데 갱생절차개시원인의 존재나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등을 생각하면 원칙적으로 감독명령 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이다. 보전관리명령발령의 요건인 '갱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회사갱생법 제30조 제1항)와 비교하여 문언의 내용은 유사하지만, 감독명령과 보전관리명령의 효과의 차이를 전제로 하면 이른바 DIP형 회사갱생을 예정하는 사업처럼 개시 전 회사의 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한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면 감독명령에 의한 감독으로 충분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보전관리명령에 의해 사업경영권이나 재산관리처분권을 보전관리인에게 전속시킬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위원은 조사위원을 겸임하는 한편 스폰서 계약의 체결 등을 포함한 개시 전 회사의 재산관리나 사업집행을 감독하는 동시에 사업재생 가능성이나 사업가 관재인의 적성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법원은 감독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회사갱생법 제36조 제1항 36 전단), 결정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한다(동조 제2항). 또 법원 서기관은 감독명령의 등기를 촉탁한다(회사갱생법 제258조 제4항).

감독명령이나 그 변경 또는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신청이 허용되는데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회사갱생법 제35조 제5, 6항). 즉시항고권자는 개시 전 회사나 갱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며 그 기간은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해 2주일이다.

감독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 중에서 선임된다(회사갱생규칙 제17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조사위원의 경우와는 달리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은 선임의 요

건이 아니다. 감독위원은 법인이라도 상관없으나(회사갱생법 제37조, 제67조 제2항, 회사갱생규칙 제17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실제로는 통상적으로 변호사가 선임된다. 감독위원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 겸직금지의무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상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안에서 변호사가 감독위원으로 선임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문헌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대체적으로 감독위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고도의 법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 감독위원을 곧바로 제3자 관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어 주로 충분한 경력이 있는 도산 분야 전문 변호사를 감독위원으로 선임하고 있다고 한다.

감독위원은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이 선임되는데(회사갱생법 제35조 제2항) 몇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직무집행이 원칙이다(회사갱생법 제37조, 제69조 제1항 본문). 다만, 관독위원들 사이에서 직무분장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회사갱생법 제69조 제1항 단서). 법원서기관은 감독위원에 대해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해야만 한다(회사갱생규칙 제17조 제1항, 제20조 제3항).

감독위원의 선임 여부(감독명령 발령 여부)는 해당 회사갱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종래 감독위원으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도산 업무 전문 변호사들 중 감독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한다.

3. 감독위원의 직무 및 지위

감독위원의 주된 직무는 법원에 의해 지정된 사항을 개시 전 회사가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회사갱생법 제35조 제2항). 동의를 얻지 않고 개시 전 회사가 실시한 행위는 무효가 되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동조 제3항).

감독위원이 법원을 대신하여 개시 전 회사의 활동을 감독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동의를 요하는 사항은 관재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지(회사갱생법 제72조 제2항)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동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 신청 및 감독위원의 동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며(회사갱생규칙 제17조 제2항, 민사재생규칙 제21조 제1항), 동의를 얻은 경우 개시 전 회사는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해야만 한

다(회사갱생규칙 제17조 제2항, 민사재생규칙 제21조 제2항).

그 외의 감독위원의 직무로는 개시 전 회사로부터의 보고를 받는 것(회사갱생규칙會更제17조 제2항, 민사재생규칙 제22조), 절차개시 전 차입금 등에 의해 발생한 채권의 공익채권화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것(회사갱생법 제128조 제3항, 회사갱생규칙 제34조), 이사 등 관재인의 적성에 관한 조사 및 보고를 하는 것(회사갱생법 제37조), 개시 전 회사의 임원이나 사용인 등에 대해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고 장부 등 물건을 검사하는 것(회사갱생법 제38조, 제77조 제1항)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직무 수행에 대하여 감독위원은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고(회사갱생법제38조, 제80조 제1항), 직무태만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회사갱생법 제38조, 제80조 제2항). 또한 감독위원은 직무집행에 대해 법원의 감독을 받는데(회사갱생법 제38조, 제68조 제1항), 법원은 감독위원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법원 서기관이 하도록 명할 수 있다(회사갱생규칙 제17조 제1항, 제21조).

감독위원은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갱생절차 기관에 준하는 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며 비용의 선불 및 법원이 정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회사갱생법 제37조, 제81조 제1항). 보수액은 그 직무와 책임에 걸맞은 것이어야만 하는데(회사갱생규칙 제17조 제1항, 제22조), 보수액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감독위원 또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회사갱생법 제38조, 제81조 제4항).

4. 감독위원의 임무종료

감독위원의 임무는 법원의 허가에 기한 사임(회사갱생규칙 제17조 제1항, 제20조 제4항), 임무해태로 인한 해임(회사갱생법 제38조, 제68조 제2항), 감독명령의 취소(회사갱생법 제35조 제4항) 등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그 외에 회사갱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즉 신청각하결정, 신청기각결정 또는 개시결정에 의해 감독명령이 실효되는 경우(회사갱생법 제35조 제1항), 감독위원의 임무가 당연히 종료된다.

Ⅲ. 일본 민사재생절차의 감독위원 제도[97]

1. 개관

법원은 재생절차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감독위원에 의한 감독을 명하는 처분(감독명령)을 내릴 수 있다(민사재생법 제54조 제1항).

민사재생절차에서는 재생채무자가 업무의 수행 및 재산의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민사재생법 제38조 제1항), 감독위원은 이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하는 직무를 부담하는 재생절차의 기관이다. 감독위원은 법원에 의해 선임되고(민사재생법 제54조 제1항),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민사재생법 제57조 제1항), 법원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담하지만(민사재생법 제125조 제3항), 법원의 보조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 직권을 행사하는 재생절차의 기관이다[98].

유사한 것으로 구 파산법에 따른 감사위원 제도가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은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직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는 점, 파산채권자에 의해 선임된다는 점에서 감독위원과 다르다.

따라서 감독명령이 발령되면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생채무자는 감독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그 권한 행사에 제약을 받는데, 업무수행권이나 재산관리처분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관재인을 임명하는 관리명령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예를 들면 민사재생법 제5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인권의 행사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독위원에게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감독명령 및 감독위원의 선임

감독명령은 재생절차개시신청이 이루어지면 재생절차개시의 전후에 관계없이 필요

97) 이하의 내용은 伊藤眞、「破産法·民事再生法」, 第3版 (有斐閣, 2014), 815쪽 이하를 주로 참고하였다.
98) 条解民事再生法【第3版】, 弘文堂、302쪽

에 따라 발령된다(민사재생법 제54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필요성은 재생채무자의 절차수행능력 등의 요소를 기초로 삼아 구체적으로 판단된다. 통상 재생채무자의 경영조직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법원에 의한 감독만으로는 불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 시행 직후부터 원칙적으로 감독위원을 모든 경우에 선임하였는데 법원 별로 실무상 다소 간의 차이가 있다.[99]

또 절차개시 전에 선임된 감독위원에 대해서는 절차개시원인의 조사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해당 조사는 조사명령(민사재생법 제62조)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감독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고(민사재생법 제55조 제1항, 동시에 당사자에게 송달한다(동조 제2항). 감독위원의 변경 또는 취소 변경은 재생계획인가 후에 동의권한을 축소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취소는 재생채무자의 성실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인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 전형적이다.

감독명령이나 그 변경 또는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만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민사재생법 제54조 제6, 7항). 즉시항고권자는 재생채무자나 재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며 그 기간은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해 2주이다(민사재생법 제9조).

감독위원은「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자」중에서 선임된다(민사재생규칙民再제20조 제1항). 조사위원의 경우와는 달리「이해관계가 없을 것」은 요건이 아니다. 그러나 선임 후에는 감독위원의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는데, 재생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나 주식의 취득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는 규정(민사재생법 제61조 제2, 3항)은 이러한 입장에 근거한 규정이다.

감독위원은 법인이어도 상관없으나(민사재생법 제54조 제3항, 민사재생규칙 제20조 제2항), 실제로는 변호사가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감독위원은 1인 또는 복수가

99) 上江州純子「再生手続の機関·費用」NBL 995호 76면(2013년)

선임되는데(민사재생법 제54조 제2항), 복수인 경우에는 공동직무집행이 원칙이지만 직무분장은 허용된다(민사재생법 제58조). 법원서기관은 감독위원에 대해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해야만 한다(민사재생규칙 제20조 제3항).

3. 감독위원의 직무, 감독위원에 대한 감독, 감독위원의 법적 지위

감독위원의 주된 직무는 법원에 의해 지정된 사항을 재생채무자가 수행하는 데 대해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민사재생법 제54조 제2항). 재생채무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재생채무자가 한 행위는 무효이고(민사재생법 제54조 제4항 본문),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동항 단서).

감독위원은 법원을 대신하여 재생채무자의 활동을 감독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동의를 요하는 사항은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민사재생법 제41조 제1항)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재생채권의 신고에 대한 인부서나 재생계획안의 작성을 동의사항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는데 이들 사항은 재생채무자 자신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며 감독위원은 재생채무자의 보조기관은 아니므로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100] 단 재생계획안에 대해 재생채권자가 찬반의 판단을 하기 위한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감독위원의 본래 직무에 속하는 것이며 부수적으로 재생계획안에 대하여 채무자를 지도할 수도 있다.

동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 신청 및 감독위원의 동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며(민사재생규칙 제21조 제1항),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생채무자는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해야만 한다.

그 외 감독위원의 직무로는 재생채무자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민사재생규칙 제22조), 절차개시 전의 차입금 등에 의해 발생한 채권의 공익화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대신하는 승인을 하는 것(민사재생법 제120조 제3항, 민사재생규칙 제55조), 재생채무자나 그 기관 또는 종업원 등에 대해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고 장부

100) 条解民事再生法【第3版】304, 307쪽

등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민사재생법 제59조 제3항),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정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민사재생규칙 제24조), 부인권 행사의 권한을 부여받아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민사재생법 제56조), 재생계획안의 작성 방침 기타 재생절차의 진행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원과 재생채무자 사이에서 협의하는 것(민사재생규칙 제23조의2), 재생계획의 수행 감독(민사재생법 제186조 제2항), 재생계획변경신청(민사재생법 제187조 제1항), 재생절차종결신청(민사재생법 제188조 제2항), 재생절차폐지신청이나 의견진술(민사재생법 제193,194조, 민사재생규칙 제98조) 등이 있다.

감독위원은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민사재생법 제60조 제1항), 그 해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부과된다(동조 제2항). 또한 감독위원은 직무집행에 대해 법원의 감독을 받고(민사재생법 제57조 제1항), 법원은 감독에 관한 사무를 법원서기관이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재생규칙 제23조).

감독위원이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황 기타 법원이 명하는 사항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은(민사재생법 제125조 제3항), 법원의 재생채무자에 대한 감독이 됨과 동시에 법원의 감독위원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기초자료가 된다.

감독위원은 위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재생절차의 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며 비용의 선불 및 법원이 정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민사재생법 제61조 제1항). 보수액은 그 직무와 책임에 걸맞은 것이어야만 한다(민사재생규칙 제25조).

4. 감독위원의 임무종료

감독위원의 임무는 법원의 허가에 근거한 사임(민사재생규칙 제23조 제2항), 임무해태로 인한 해임(민사재생법 제57조 제2항), 감독명령의 취소(민사재생법 제54조 제5항) 외에 재생절차종결결정(민사재생법 제188조 제4항), 재생계획취소결정의 확정(민사재생법 제189조 제8항, 제188조 제4항)이나 재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에 의해 감독명령이 실효(민사재생법 제188조 제4항, 제189조 제8항, 제195조 제7항)됨에 따라 종료된다.

제5장

현행 관리위원회 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에 관한 각계의 의견

제1절 현행 관리위원회 제도의 현황

Ⅰ. 상임 관리위원들의 현황[101]

2018. 4. 2. 기준 전국 법원에 근무하는 상임 관리위원은 총 27명이고, 채무자회생법 제16조 제3항의 자격 유형별 분포는 ① 변호사 3명(11%), ② 회계사 8명(30%), ③ 은행 출신 13명(48%), ④ 상장기업 출신 3명(11%) 등이다.

Ⅱ. 도산절차별 담당 업무

앞서 관리위원회의 담당 업무를 상세히 정리하였으나 현재 제도 하에서 관리위원회가 각 도산절차 별로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를 대체적으로 개관하면 아래 각 항목과 같다. 실무상 관리위원회의 업무는 회생절차에만 집중되어 있고,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관리위원회가 관여하고 있는 업무가 별로 없다. 위와 같은 실무가 형성된 원인으로는, 연혁상 관리위원회 제도의 도입이 회생절차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점[102]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1. 회생절차

① 보전처분, 개시결정 등에 대한 의견 제시

② 대표자심문, 현장검증 참여, 보전처분 및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 채무자의 실무자 등에 대한 절차 안내 및 지도

③ 채권자목록, 시부인표의 작성 지도, 조사보고서 초안 검토, 조사위원 보고 참석

101)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미국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연구”, 133쪽 참조
102) 구본천, “회사정리제도(법정관리)와 화의제도의 개선방안”, 회사정리제도(법정관리)와 화의제도의 개선방안 공청회, 한국개발연구원(1998. 1. 13. 발표), 7~9쪽

④ 관계인집회자료의 사전 검토, 수정의견 제시, 관리인의 보고 등에 관한 실무 지도, 집회에서의 의견 개진

⑤ 회생계획안의 사전 검토 및 수정의견 제시

⑥ 인가 후 관리인 및 감사의 업무수행 감독

⑦ 법원의 위임사무 처리, 재판부 허가사항에 대한 허가신청서 공람 및 검토의견제시, 기타 각종 절차 진행관련 의견 제시

2. 파산절차

관리위원회는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 선임에 대한 의견제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355조 제1항).

법률상으로는 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 및 평가는 관리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실무상 파산관재인의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관리위원회가 실질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 및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 관리위원회는 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법원의 의뢰에 따라 일부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에서도 관리위원회가 관여하고 있는 업무가 사실상 거의 없고, 외부회생위원에 대한 평정 과정에 약간의 관여를 하고 있다.[103]

103) 법원은 '외부회생위원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그로 하여금 외부회생위원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도록 하고, 관리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평정 관련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2절 관리위원들의 개선 의견(사법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104]

최근 사법정책연구원에서는 “미국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연구”라는 보고서의 작성 과정에서 관리위원회의 실제 실무 운영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서울회생법원 및 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관리위원으로 재직한 전·현직 관리위원들(전직 관리위원 7명, 현직 관리위원 9명 등 총 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에는 관리위원회 제도의 현황 및 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한 관리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담겨 있으므로 이번 연구보고서에서도 해당 설문조사 결과의 결과물을 간단히 인용하고자 한다.

위 연구보고서는 관리위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체로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① 관리위원회의 업무가 주로 회생절차(간이회생, 회단사건 포함)에만 치중되어 있고,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는 거의 관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중에서 법인회생절차의 비중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바, 주로 법인회생사건의 처리 위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관리위원 1인당 담당하는 사건 수가 상당히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주로 2016년 이전에 근무한 전직 관리위원의 경우 1인당 담당사건 수가 약 110건 정도였는데 반해, 현직 관리위원의 경우 1인당 담당사건 수가 약 35.9건으로 약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관리위원은 여전히 현행 관리위원회 제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관리위원의 인력 보충에 따른 업무 부담 경감 및 업무의 질 향상’을 꼽고 있는데, 이는 회생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위한 절차진행 관련 업무의 증가와 인가 후 사건 관리업무의 강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③ 관리위원회의 6가지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여겨지는 업무로 ‘도산절

104)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미국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연구”, 135쪽 이하를 참고하였다.

차관계인 지도업무'가 지목되었고,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여겨지는 업무로 '도산절차관계인 감독업무'가 꼽혔다는 점이다. 원래 회생채권의 시·부인이나 회생계획안 작성 업무 등은 관리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임에도 채무자가 도산전문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들어오다 보니 사건 진행의 지연이나 차질을 막기 위하여 관리위원이 이를 지도하고 보완해주느라 시간과 노력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관리위원은 '도산절차관계인감독업무'에 투입할 시간과 노력이 부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외부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지도업무'의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좀 더 충실하고 실질적인 '전문가로서 의견제시 업무'나 '도산절차관계인 감독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④ 다수의 관리위원들은 관리위원회가 그 업무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관리위원으로서 업무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다.

⑤ 관리위원회는 회의체 형식이 아니라 사실상 주무 관리위원이 전담하고 있고, 가끔씩 회의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직 관리위원의 설문조사 결과와 달리 현직 관리위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회의체 운영의 방식이 점차 확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⑥ 관리위원회의 권한 중 하나인 다른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나 협력요청은 그다지 자주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권한은 약 2/3 가량의 관리위원이 가끔 활용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1/3의 관리위원은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⑦ 관리위원회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사항으로 가장 많은 관리위원(56.3%)이 지목한 사항은 바로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감독 및 평가기능의 강화'였다. 그 다음으로는 "관리위원의 인력 보충에 따른 업무 부담 경감 및 업무의 질 향상"(37.5%)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재 업무 비중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감독 및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실질화하여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나온 결론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지도업무'나 '단순한 행정적 업무' 등으로 인해 가중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제3절 현행 관리위원회 제도 및 실무 개선 방향에 관한 종전 의견들 및 각 의견들에 대한 검토

현행 관리위원회 제도와 관련하여 제도의 구조 및 실무적인 개선 방향에 대하여 그간 국내에서도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논문, 발표문, 연구보고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종전 의견들을 대체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Ⅰ. 대심구조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

도산절차가 소송절차인지 비송절차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비송적 성격을 적지 않게 갖추고 있음이 분명하고, 현행 도산실무에서 도산사건 담당 판사를 비롯해 관리위원, 회생위원이 포함된 법원 측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후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립당사자 구조를 전제로 한 대심주의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으므로, 도산제도의 공정성이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105]

해당 주장은 전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관재인 제도를 신설하거나, 궁극적으로는 관리위원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106] 해당 주장에 의하면, 채무자와 채권자를 각각 도산전문 변호사가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도산절차를 대심구조 하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판사는 양 당사자 간의 의견의 대립이 있는 문제에 대하여만 법률적 판단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협의회의 참여를 활성화하거나 전체 채권자를 위하여 활동할 관재인 제도를 신설하고, 전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주체가 없는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할 관재인 제도를 신설하며, 모든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모든 도산절차에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위원과 회생

105) 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연구센터, 도산감독기관 설치 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과제보고서(2009), 10쪽
106) 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연구센터, 도산감독기관 설치 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과제보고서(2009), 40 ~ 42쪽

위원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107]

이러한 의견을 완화하여 생각해 보자면, 기본적으로 도산절차에서 대심구조의 장점인 이해당사자들의 절차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도산제도의 공정성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해되는데, 최근 서울회생법원을 중심으로 채권자협의회를 비롯한 채권자 측의 절차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해소해 나가고 있다는 반론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미국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연구"에서는 도산절차에서 대심구조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적용상 유의할 점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08]

○ 도산절차에서 대립당사자 관계가 일반적인 소송절차에서와는 다름
- 원고와 피고로 대표되는 양 당사자가 대립하는 일반 소송절차와는 달리 도산 절차에서는 수많은 경쟁적 이익을 가진 다수의 당사자들이 다면적으로 대립.
- 어느 한 채권자의 이익은 다른 채권자의 손해로 귀결될 수 있고, 공익채권자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사이의 이해관계 역시 다양하게 그 충돌의 양상이 나타남
- 채권자협의회 등 채권자를 대표하는 기관이 있더라도 모든 전체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는 없음

○ 도산절차의 목적이 일반 소송절차와도 다름
- 과거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소송절차와 달리 도산절차는 채무자의 회생 또는 청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가 아닌 미래를 예측하고 경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음
-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재판이 아닌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사를 묻고 그에 관한 결의를 진행함

○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대심구조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도산절차의 다면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결하기 어렵고, 도산절차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움

○ 실무상으로도 아직은 대심구조를 관철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대심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채무자,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조력할 수 있는 도산전문변호사와 같은 도산전문가들이 필요

107) 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연구센터, 도산감독기관 설치 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과제보고서(2009), 96쪽
108)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미국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연구"158쪽 이하

- 그러나 법원 외부의 도산전문가들의 역할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도산법이나 도산실무를 전공한 인력이 매우 드물고, 변호사업계에서도 아직은 도산 분야가 하나의 전문분야로 자리잡을만한 여건이 아님
- 채무자의 신청대리인의 업무 미숙, 전문성 결여,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이들이 하여야 할 업무까지도 관리위원이 지도·권고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떠맡아서 처리하고 있고, 그로 인한 업무과중으로 다른 업무에 소홀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관리위원들의 입장

○ 도산전문법원의 설립, 도산전문판사의 양성, 도산전문 변호사를 대폭 양성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도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도산절차에서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관리위원회 제도는 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도산절차관계인을 관리감독하는 등의 본연의 역할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임

Ⅱ. 재판기능과 관리감독기능의 분리, 법원과 분리된 감독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위 (1)항에서 소개한 대심구조의 강화 방안과 유사한 관점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법원이 재판기능과 관리감독기능을 함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의 재판기능과 관리감독기능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법관과 관리인, 파산관재인, 회생위원이 사실상 상명하복관계에 있으므로 법원의 제3자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법기관으로서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도산절차에서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기능과 절차를 진행하고 채무자의 재산이나 업무를 관리하는 기능이 법원에 집중되어 있는데, 재판기능을 중심으로 설계된 조직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관리감독기능을 분리하여야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109]

이러한 관점에서 조금 더 나아가 법원과 분리된 도산감독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산하에 도산관리기관을 두되, 중앙도산관리기관-고등

109) 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연구센터, 도산감독기관 설치 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과제보고서(2009), 46쪽

도산관리기관-지방도산관리기관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도산관리국-지방도산관리청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110]

재판기능과 관리기능이 분리되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인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등을 감독할 기구가 필요할 것인데, 위 기구는 재판기능에 적합한 조직이 아니라 행정적 기능에 적합한 조직을 갖추고 통일적이고 예측가능한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 내의 관리위원회가 되었든, 법원 외부의 기관이 되었든 간에 어느 기관이 수행하든지 재판기능에서 분리되어야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111]

이에 대하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미국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연구"에서는 법원 외부에 도산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데 해당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12]

- ❍ 도산감독기관은 행정적인 업무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통일적이고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업무수행을 감독하면 충분하고, 그 기관이 법원 내에 있는지, 법원 밖에 있는지는 그다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님.
- ❍ 법원에서도 사법행정의 분야가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 법원의 기능은 전통적인 재판작용에만 한정되지 않고 문제해결법원과 같이 재판 이외의 기능도 함께 확보해 나가고 있음
- ❍ 미국에서도 파산법원이 절차진행의 감독을 완전히 연방관리관 등에게 맡기는 것은 아니고 행정적인 사항(administrative matters)에 관여함
- ❍ 법원 이외의 기관 중에 어느 곳이 다수의 이해관계를 조정·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원만큼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의문임
- ❍ 도산감독기관이 법무부나 다른 행정부처의 소속 하에 있는 경우 정치권으로부터 압력이나 영향력을 받을 수 있고, 법원에 준할 정도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우려스러움
- ❍ 법무부 산하에 도산감독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도산절차의 진행과 도산절차 밖의 형사처벌에 모두 관여하게 되어 도산절차가 형사사건화할 우려가 있고, 조세채권 관련 처리에 있어 중립성이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
- ❍ 도산절차관계인이 도산감독기구와 법원을 중복해서 거치는 동안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110)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도산관리기관 조직 및 예산 분석, 법무부 연구용역과제보고서(2012) 125 ~ 127쪽
111) 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연구센터, 도산감독기관 설치 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과제보고서(2009), 46쪽
112)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미국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연구"164쪽 이하

자료를 이중으로 제출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 법원과 도산감독기구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불필요한 절차의 지연과 비효율이 야기될 수 있음
- ❍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법원 외부에 별도의 기관을 신설하고 인력을 확보할만한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임

앞서 각국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감독 업무의 주체를 사법부 소속으로 할 것인지 또는 행정부(법무부) 소속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각 국의 상황에 따라 제각각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관리위원회 제도는 그 도입과정에서 법무부 산하에 있는 연방관재인 제도를 염두하고 있었다고 평가되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앞서 소개한 연방파산관리인 제도가 일부 주에서 이용되고 있고, 위 연방파산관리인 제도는 사법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또한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법원에 소속되었거나 법원이 임명하는 기관(감독위원, 사법보좌관)에 의하여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감독 업무 등이 수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현행 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사법부와 독립시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당위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Ⅲ.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감독기능이 미흡하다는 의견[113]

앞서 관리위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관리위원회의 업무는 회생절차뿐 아니라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현행 운영 실무는 회생절차에만 그 업무가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의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감독기능 문제는 기본적으로 조직 구성이나 관리체계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관리위원회의 인력 부족과 업무과다로 인한 문제에 불과하므로, 관리위원회의 인적·물적 역량을 강화하고, 그동

113) 오세용 외 3인, “관리위원회 조직개편 및 기능강화 등” [내부보고서], 법원행정처(2014. 8. 25.), 19~20쪽,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미국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연구”157쪽에서 재인용

안 담당하였던 업무를 재조정하여 관리감독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114]

Ⅳ. 관리위원의 허가사무처리가 재판청구권의 침해라는 의견

관리위원은 채무자나 관리인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하여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고, 관리인의 각종 경영행위에 과도하게 간섭하게 되면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회생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실무를 살펴 보면, 관리위원은 재판부의 허가사항 중 대부분의 신청 건에 대한 1차적 검토를 하면서, 임의로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거나, 신청서가 접수된 건을 장기간 보관하여 절차 진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구체적인 신청 건의 검토 과정에서 관리위원과 법관의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절차 진행에 상당한 혼선이 초래되고,[115] 관리인 등 도산절차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의 견해를 우선시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연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도산 절차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류해 본 결과, 현행 실무의 이와 같은 문제점은 절차관계인들이 관리위원회에 제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도산절차관계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관과 주무 관리위원의 의견이 다르거나, 주무 관리위원이 긴급한 허가 사항에 대하여 절차 진행을 보류하거나, 허가 신청서에 대한 1차적 검토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관리위원 별로 업무스타일이 달라 매번 유사한 문제점이 반복된다는 점을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116]

---

114) 김희중, "관리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2012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 결과보고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7~29쪽

115) 이 점에 대해서는 김희중, "관리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2012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 결과보고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7~28.

116) 이에 대해서는 최근 관리위원들의 전반적인 업무 감소로 인하여 관리위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절차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다소 줄어들고 있다는 일부 견해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재판청구권의 입장에서 고찰해 보면, 관리위원 제도와 같이 법관 이외의 전문가가 재량을 갖고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되면 사법절차는 행정절차와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되고, 관리위원이 사실상 법관의 판단을 대신하게 되어 법관 이외의 자가 법관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로 발전하게 된다.[117] 나아가 법원이 관리위원에게 일정한 범위의 허가사무를 위임하는 것이 헌법상 인정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미국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연구"에서는 관리위원의 허가사무처리가 재판청구권의 침해라는 주장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데 해당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18]

- ❍ 관리위원이 법원으로부터 일정 부분 위임받는 허가사무는,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것으로서 전통적으로 법원이 행하는 재판사항이 아님
- ❍ 허가사무의 위임 범위 또한 일정한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음
- ❍ 관리위원의 행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 전문성이 있는 관리위원으로 하여금 일부 허가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위 연구총서에서 적절히 정리하고 있듯이 전문성이 있는 관리위원으로 하여금 일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간단한 허가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현행의 제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또한, 종래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주무 관리위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결재 지연의 문제점은 최근 관리위원의 증원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부분 문제점은 법원의 관리위원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하여 실무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여지도 있다.

117) 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연구센터, 도산감독기관 설치 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과제보고서(2009), 40쪽
118)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미국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연구"167쪽 이하

결국, 이 부분 문제제기는 실무적으로 법관과 주무 관리위원의 의견이 다르거나 채무자가 관리위원의 허가 관련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관리위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는 것이 여의치 않고, 그 과정에서 재판청구권을 침해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법원이 현재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관리위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모든 의사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법관에게 있음을 공고히 하는 경우, 해당 부분 논란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제4절 설문조사 결과

관리위원회 제도 개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하여, 별첨 1과 같은 설문지를 작성한 후, 도산 실무에 관여하는 법관, 변호사, 교수, 기타 법률사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문은 익명으로 진행하였고, 도산법연구회 등 도산 관련 연구모임들의 도움을 받아 다수의 설문 결과를 취합하고자 하였다.

Ⅰ. 관리위원회의 구성 관련

현재 관리위원들(2018. 4. 기준 상임 27명)은 주로, 변호사(3명), 회계사(8명), 은행 등 금융기관(13명), 상장기업 등 출신(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금융기관 출신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① 현행 회생절차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에게 요구되는 전문분야가 있는지, ② 현재와 같은 출신 분포와 관련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설문하였다.

설문 결과, 회생절차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에게 요구되는 전문분야로는 회계 및 법률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의견의 일환으로서 법인 회생절차에서 인적 구조조정이 자주 문제되므로 노동법 이슈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의견, 회생계획의 이행 가능성 및 조사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회계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다.

이상의 의견을 통하여 현업에 종사하는 도산절차관계인들이 관리위원에게 주로 요구하고 있는 법률서비스는 회생절차 진행에 필요한 각종 법률 분야와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검토에 필요한 회계 분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출신 분포에 대한 개선 의견으로는 도산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 출신 상임위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회계사 출신의 비중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기관 출신의 경우,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은행 출신이 관리위원으로 다수 임명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Ⅱ. 관리위원의 수, 업무량 등 관련

2018년 기준 관리위원의 담당하고 있는 인당 사건 수는 평균 약 35.9건이고, 최근 관리위원 증가에 따라 대체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① 관리위원의 담당 사건 수와 관련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② 관리위원의 숫자를 증가시키거나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체로 지속적으로 관리위원 수를 증가시켜 회생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및 좀 더 실질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전체의 약 70% 정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지는 않았으나 숫자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거나 관리위원의 역할을 줄이고 신청대리인 또는 개시 후 대리인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전체의 약 30%)도 있었다.

Ⅲ. 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관련

이번 설문에서는 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① 의견제시 업무, ② 도산절차관계인 지도 업무, ③ 도산절차관계인 감독 업무, ④ 법원의 위임사무 처리 업무 등 4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해당 부분의 경우, 많은 설문지에서 공란으로 비워 둔 경우가 많아 어떠한 통일적인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아마도 설문대상자들이 관리위원회 제도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관리위원회의 개별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깊은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인 것이라고 추측된다.

각 업무 분야 별로 개별적으로 개진된 의견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의견제시 업무

이 부분과 관련하여 개진된 의견들을 개별적으로 나열해 보면, ① 회생절차 폐지 의견 제시 관련 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불충분하다는 의견, ② 관리위원회가 어떠한 지위에서 법률의견을 제시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의견, ③ 의견제시가 실효적인 것 같지 않다는 의견, ④ 법률과 관계된 일에서는 법률비전문가인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이상과 같이 개진된 의견의 경우, 대체적으로 관리위원회의 의견제시가 불충분하다거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관리위원회가 어떠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2. 도산절차관계인 지도 업무

이에 대해서는 ① 법관이 아닌 관리위원이 실질적인 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도산절차의 당사자(채무자)가 실질적으로 관리위원을 법관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의

견, ② 지도라기 보다는 권고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③ 채무자 회사, 관리인이 자기 책임하에 업무를 진행하도록 관리위원의 지도 업무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④ 회생절차 및 법률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⑤ 지도 업무에서 관리위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 ⑥ 과도한 업무 부담 탓인지 형식적이고 불친절하게 지도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3. 도산절차관계인 감독 업무

이에 대해서는 ①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감독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② 감독 업무에서 관리위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 ③ 감독은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관리위원이 감독 업무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다.

4. 법원의 위임사무 처리 업무

법원의 위임사무 처리 업무에 관해서는 ① 법원이 관리위원에게 다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위임 범위가 넓은 것이 문제라는 의견, ② 현재 업무 처리가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Ⅳ. 관리위원회 제도의 구조적인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

현행 관리위원회 제도에 대해서는 그간 (1) 도산절차에서 대심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2) 재판기능과 관리감독기능을 분리하자는 의견, (3)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감독기능이 미흡하다는 의견, (4) 관리위원의 허가사무처리가 재판청구권(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왔다.

이러한 종전의 의견에 대하여 이번 설문을 통하여 어떠한 의견에 찬성하는지 또는 새로운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설문 결과, ① 재판기능과 관리감독기능을 분리하자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 ②

관리위원의 경우 보다 행정적인 업무(예를 들어 보고서 제출의 가부 확인 등)로 업무 범위를 제한하자는 의견, ③ 관리위원이 사실상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고, 비법률가에 의한 절차 운용으로 인하여 규정에 맞지 않는 사무처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④ 채무자, 관리인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축소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의사소통 추진 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⑤ 법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Ⅴ. 기타 현행 제도의 장·단점, 개선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이에 대해서는 ① 유사한 업종이나 산업별로 관리위원에게 반복적으로 사건을 배정하여 보다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자는 의견, ② 관리위원이 퇴직한 후 회생 사건의 브로커화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③ 전문법관 양성을 통하여 현행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 ④ 관리위원들 사이에서 업무처리 스타일이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주무 관리위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회생절차 진행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므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위원의 재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 ⑤ 점진적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관리위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다.

제6장

관리위원회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전항에서는 현행 관리위원회 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에 관한 종전의 의견, 관리위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도산절차관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종전 의견이나 설문 결과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부기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전 논의들을 재점검하고, 많은 사람들과 관리위원회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의견을 정리할 수 있었다.

제1절 제도의 폐지 여부 등에 관하여

궁극적으로 관리위원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몇몇 연구보고서[119] 및 개별 설문조사 등의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저에는 ①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해서 도산 절차가 주도되는 경우,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② 종래 관리위원회 제도가 법관 및 신청대리인 측의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도산 실무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이라면, 전문법원의 설치, 전문법관의 양성, 도산 전문 변호사들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현재 또는 근 시일 이내에 종전의 문제점들이 극복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현행 관리위원회 제도의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하여 그 동안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개진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①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실상 수행하고 있는 주무 관리위원이 개별 회생 사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②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관리위원의 확충을 통하여 보다 심층적인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 ③ 중소기업 등과 같이 도산절차에 충분한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119) 대표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연구센터, 도산감독기관 설치 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과제보고서(2009), 96쪽

채무자의 경우, 여전히 관리위원을 통하여 회생절차 운영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으므로 관리위원회 제도를 단기에 폐지하는 경우, 실무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실적으로 단시일 내에 관리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고, 관리위원회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 또한 위와 같은 다양한 예상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극복 방안이 구축된 이후,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나가자는 의견이라고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일부 폐지 의견의 경우, 제도를 폐지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가 개진되지 않아서 관리위원과의 업무 과정에서 생긴 불만으로 인하여 감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현행 관리위원회 제도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의 내역을 분석해 보면, 향후 전문법관의 양성 및 도산절차관계인들의 경험 축적에 따라 점진적으로 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줄여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전문가로서 의견제시 업무의 경우, 절차 진행에 능통한 법관과 신청대리인이 얼마든지 사안을 주도해 나갈 수 있고, 도산절차관계인 지도 업무 또한 신청대리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는다면 그 역할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전술하였듯이 중소기업 등의 경우, 단기간에 관리위원의 역할을 줄여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으리라 전망된다). 법원의 위임사무 처리업무 또한 조직 및 예산 등의 제약이 있겠으나 전문법관의 수를 늘려 관리위원회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줄여나가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감독 업무는 반드시 관리위원회가 이를 수행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담당 법관이나 법원의 직원(독일의 사법보좌관 유사)을 통하여 이를 감독하는 방안도 가능하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3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또한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 여부를 떠나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관리위원회 제도를 유지할 것이냐 또는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갈 것이냐는 문제는 정책의 방향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이고, 현실상 단기간에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결국 어떠한 방향이 보다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앞서 소개한 현행 제도상 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들의 경우, 반드시 관리위원회가 이를 수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는 것이므로 개별 업무 별로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간 관리위원회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어 왔으나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보다 자유롭게 토론할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대체로 법원 내부적인 모임이나 제도 연구를 통하여 이 부분이 연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공개적인 토론회 등에서 관리위원회의 제도 개선에 관한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추진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제2절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감독 기능 관련, 회생·파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앞서 소개하였듯이 회생·파산위원회는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관계인에 대한 체계적·통일적인 감독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심의·자문기구로서, 다양한 분야의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그 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여 왔다.

회생·파산위원회는 도산절차에 관한 일부 감독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즉, 관리위원 후보자의 추천 및 해촉 의견 제시, 법원 사무관 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선발,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심사,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 관한 의견 제시, 관리인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 제시 등의 업무의 경우, 분명히 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도산절차에 대한 관리감독기구로서의 역할과 유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현행 우리나라의 도산 절차의 경우, 관리위원회가 개별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관리인,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등 절차관계인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회생·파산위원회가 관리위원회의 업무수행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전체 절차관계인에 대한 간접적인 감독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위원 후보자 선정에 관여함으로써 절차관계인에 직접적인 감독업무도 일부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파산관리인이 개별 법원의 관여 없이 직접 파산관리인 명부를 작성하고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할 상임관리인을 선임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위 와 같은 회생·파산위원회의 역할은 회생·파산위원회 자체가 대법원 규칙을 근거로 설치된 자문기구에 불과하고, 절차관계인에 대한 감독기능 역시 각종 재판예규에 근거를 두고 있어 효력이 미약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120]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선임 방법, 임기 및 신분보장, 위원장·사무기구 등의 조직과 권한구성, 조직, 업무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나아가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위촉·해촉 권한 등을 부여하여 그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재판기능과 관리감독기능의 집중에 따른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한층 더 해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제3절 관리위원회 인력 구성 등에 관한 의견

Ⅰ. 출신지의 배분 관련

앞서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하여 확인되었듯이, 관리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관련하여 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비중이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상대적으로 현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기관 출신의 비중은 줄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120)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미국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연구” 176쪽 이하

이와 관련하여 종래 금융기관 출신이 선호되었던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① 대부분의 도산 사건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해당 채권자들과 채무자의 의사 연락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므로 관리위원 중 상당 수가 금융기관 출신으로 임명되었거나 ② 혹은 변호사, 회계사 중 관리위원을 지망하는 자의 수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도 평가해 볼 수 있다.

설문조사에 응한 참가자들 중, 금융기관 출신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이러한 의견이 다수 개진된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금융기관 출신의 관리위원이 선호되었던 이유는 결국 이들의 기업금융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채권자들의 협조가 절실한 통상의 회생 절차에서 이들 채권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필요한 경우 채무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협상 등을 부드럽게 유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설문에 응답한 도산절차관계인들이 금융기관 출신에 비하여 회계사나 변호사의 비중이 늘어야 한다고 응답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최근의 실무상 관리인 등 채무자 측 관계자들의 경우, 금융기관 채권자에 대한 이해나 금융기관 채권자와의 협상보다는 구체적인 법률 이슈나 회계 이슈 부분에서 보다 더 큰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의견 제기의 원인으로는 ① 회생절차 진행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회생절차에서 금융기관 채권자들과의 의사 연락이나 협상 등의 노하우가 축적되고 있다는 점, ② 관리위원들의 경우, 법률이나 실무상 채무자와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 사이의 협상 등을 주재할 의무가 부여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관리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인들의 조정 절차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 종전과 같이 금융기관 출신 관리위원을 다수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법원 차원에서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충분한 법률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대응 등을 비롯하여 여전히 상당 부분의 회생절차 진행을 관리위원에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 출신 관리위원의 수를 급작스럽게 줄이기 보다는 현재 금융기관 채권자의 대응의 관점에서 관리위원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조명한 다음, 점진적으로 관리위

원의 출신 구성을 변경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설문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변호사, 회계사 출신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관하여 관리위원회의 업무 범위나 책임의 측면에서 과연 관리위원이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인 구체적인 법률이나 회계 이슈에 관하여 도산절차관계인들에게 구체적인 지도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최소한 상임 관리위원 중 변호사와 회계사 출신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관리위원회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여전히 도산 업무에 밝은 회계사나 변호사들의 수가 많지 않다는 평가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관리위원으로 임명되는 회계사나 변호사에게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시행 이후 다양한 사건들이 처리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쌓은 회계사, 변호사들의 수 또한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향후 법원이 관리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회계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 일정 정도 이상의 관련 업무 수행 경력을 가진 자를 적극적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관리위원의 여러 역할 중, 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주로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만약 상임 관리위원 중 회계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각 사건별로 상임 관리위원을 복수로 선정하여(예를 들어 변호사 출신 1인, 회계사 출신 1인 등) 이들로 하여금 각자의 전문성에 맞게 협업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관리위원회의 증원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으나, 최근 상임 관리위원의 수가 늘어나면서 분명히 관리위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허가 업무 등의 처리가 지체되는 사안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자들의 실무 수행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최근 관리위원들이 허가 사무의 처리 과정에서 늑장을 부리거나 관리위원의 검토 과정

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은 흔하지 않아 보인다.

관리위원회 제도를 유지시켜 나가는 이상, 인력 수급이나 충원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 여전히 다수의 응답자들이 관리위원의 충원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위원의 수를 지속적으로 증원시킨 다음, 그 결과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더하여 채무자회생법상 관리위원회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법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대법원 규칙에서는 전국법원에 모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13조). 아울러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임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규칙 제15조), 위와 같은 규칙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전국법원에 필수적으로 상임 관리위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현재 상임 관리위원이 없는 청주, 춘천, 제주지방법원 등의 경우에는 상임 관리위원 배치를 위한 관리위원 증원이 필요해 보인다.

제4절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지도 업무 등의 개선 방향 : 주무 관리위원의 업무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규 등 정비 필요

(1) 앞서 소개하였듯이 현행 관리위원회 제도에 대하여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도산절차관계인들에 대한 지도 또는 재판부의 허가사항의 처리 과정에서 관리위원 별로 업무 스타일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 그리고 법관과 주무 관리위원 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관리인에게 혼란이 초래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회생법원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업무 내규 등을 재정비하여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2) 우선 관리위원 별로 도산절차관계인들에 대한 지도 또는 허가사항의 처리 과정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부분은 대체로 ① 허가신청서의 양식, ② 허가신청서에 대한 관리위원의 사전 검토를 요청하는 방안(대면검토, 이메일검토 등), ③ 허가신청서에 대

한 사전 검토가 진행되어야 하는 시점 등에 대하여 각 법원의 실무와 주무 관리위원별로 제각각의 입장이 표명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회생법원으로서는 실무상 자주 불만이 표시되고 있는 대목을 정확히 분석한 다음, 해당 부분에서 법원 별, 주무 관리위원 별 업무 수행 방법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업무 내규를 재정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전형적으로 요구되는 허가신청서의 양식과 문구를 정비하여 회생법원의 사이트나 회생법원 준칙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한 후, 해당 양식의 사용을 권장하는 방안, 허가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관리위원의 사전 검토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예규 등을 통하여 통일화하는 방안 등은 즉시 시행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3) 법관과 주무 관리위원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또한 실무적으로 도산절차관계인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대목이다.

이론적으로는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법관에게 있는 것이므로 관리인 등 도산절차관계인으로서는 법관의 뜻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겠으나, 실상 도산절차관계인과 빈번하게 접촉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주체는 법관이 아니라 주무 관리위원이므로 관리인 등으로서는 회생 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주무 관리위원의 뜻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법원 내부적으로 법관과 관리위원의 의견이 사전에 조율된 다음, 대외적으로 표출된다면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① 허가 사항 등 법원의 결재가 필요한 업무와 관련하여 초기 검토 과정에서 관리위원이 표명한 의견과 최종적으로 법관이 결정한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경우, ② 사안에 따라 관리인이나 신청대리인이 법관을 직접 대면하여 절차 진행에 관한 잠정적인 방향을 논의하였는데, 관리위원이 추후에 해당 사실을 인식한 후, 법관과는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등이 주로 관리인을 당혹스럽게 하는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소개하였듯이 ① 허가 사항 등의 검토 과정에서 법원 내부적으로 내규 등을 재정비하여 관리인이나 신청대리인으로 하여금 획일화된 절차 진행을 보장하는 방안, ② 도산절차관계인과 법원 사이의 면담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비하여 법관과 관리위원이 항상 동일한 자리에서 의견을 표명하도록 정비하는 방안, ③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이미 정립된 법률상의 쟁점을 제외하고는 관리위원으로 하여금 1차적인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도산절차관계인들이 관리위원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은 실제 문제되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앞서 언급한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통하여 현행 실무의 문제점에 관한 도산절차관계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어 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5절 관리위원회에 대한 업무 지원 방안

규칙 제21조 제1항은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직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회생법원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할 간사 및 직원을 지정하여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리위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 또한 제기된다. 특히 현재 관리위원들이 업무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산절차관계인들에 대한 지도 업무의 경우, 상당 부분은 도산절차에 대한 기본지식과 약간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따라서 관리위원회에 도산절차에 대한 기본지식과 실무경험을 구비한 업무보조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위와 같은 지도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경우, 관리위원들의 기존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본연의 관리업무 및 절차관계인에 대한 감독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121]

다만, 절차관계인에 대한 지도업무를 담당할 업무보조 직원의 경우 도산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어느 정도의 실무경험이 요구되나 법원 외부에서 이와 같은 자격을 구비한 사람을 찾기 어렵고, 서울회생법원의 개원으로 법관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도 기대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도산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법원 일반직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위원회의 업무보조를 담당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122]

제6절 관리위원의 업무 수행 관련 규칙의 재정비 및 업무수행 모니터링 : 관리위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규정의 활성화 방안

관리위원회 제도에 관한 현행 절차 중에서는 관리위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규정(채무자회생법 제19조)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관리위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규정의 경우, 도산절차관계인으로서는 실제로 불복 절차가 인용되어 처분이 경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주무 관리위원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해당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관리위원에게 위임된 허가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관리위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허가 신청 건이 원활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 자칫 채무자의 회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도산절차관계인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① 우선

121)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미국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연구”179쪽
122)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미국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연구”179쪽

앞서 언급하였듯이 관리위원의 업무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규 등을 정비하여 관리위원의 재량권 행사를 최소화하는 방안, ② 도산절차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주무 관리위원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나아가 관리위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외부 모니터링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위원이기에 내부적인 평가를 통해 업무 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겠으나, 법관보다도 관리인, 채무자의 실무 담당자, 대리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조사위원 등의 접촉이 많은 관리위원에 대한 평가는 외부에서의 시각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종결된 사건의 관리인, 채무자의 실무 담당자, 대리인, 채권자, 조사위원 등으로 하여금 1년에 2회 정도 익명의 설문 등의 방법으로 관리위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한 의견을 취합해 둔다면, 상당수 관리위원에 대한 외부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7장

결론

이상과 같이 현행 관리위원회의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① 현행 제도의 연혁 및 현황, ② 해외의 유사 사례, ③ 기존에 제기되었던 개선 의견, ④ 최근 설문조사 결과, ⑤ 연구자들의 보완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각국 별로 도산법 및 도산실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듯이, 도산절차관계인들에 대한 지도 내지 감독 의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또는 유사 제도 또한 각 국 별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정리하였듯이 각 국의 제도는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 것이므로 특정국의 법률이나 실무를 그대로 추종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관리위원회 제도의 실정에 맞는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실무상 제기되고 있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검토한 개선 의견들을 정리하였다.

본문에서 정리한 연구 및 검토 결과 내지 연구자들의 의견을 간략히 요약하면, ① 현행 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가 사법부와 독립된 별도의 조직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당위성을 갖기는 어렵다는 점, ② 현행의 제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현재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관리위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회생·파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감독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④ 상임 관리위원 중 회계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각 사건별로 상임 관리위원을 복수로 선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자의 전문성에 맞게 협업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는 점, ⑤ 현재 상임 관리위원이 없는 청주, 춘천, 제주지방법원 등의 경우에는 상임 관리위원 배치를 위한 관리위원 증원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 ⑥ 허가 사항 등의 검토 과정에서 법원 내부적으로 내규 등을 재정비하여 관리인이나 신청대리인으로 하여금 획일화된 절차 진행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⑦ 관리위원회에 도산절차에 대한 기본지식과 실무경험을 구비한 업무보조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⑧ 종결된 사건의 관리인, 채무자의 실무담당자, 대리인, 채권자, 조사위원 등을 통하여 설문 등의 방법으로 관리위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의견을 취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끝으로 그간 다양한 주체들에 의하여 관리위원회 제도에 대한 문제점 내지 개선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실제로 관리위원회와 자주 대면하는 도산절차관계인들의 개선 의견은

적극적으로 표출되지 못하였고, 주로 법원과 법무부의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각자의 입장이 개진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향후 관리위원회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심포지움 등의 공개적 의견수렴 절차를 자주 진행하여 현장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연구용역 보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끝〉

참 고 문 헌

〈국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하) 제4판, 박영사(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제4판, 박영사(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개인파산·회생실무 제4판, 박영사(2014)

강민호, 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파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2014)

윤영신, 영국의 도산법

오세용 외 3인, "관리위원회 조직개편 및 기능강화 등" [내부보고서], 법원행정(2014. 8. 25.)

김주학, "미국 연방관재관 제도의 도입논의에 대한 실무적 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50호 (2010.4.)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미국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연구"

정준영, 사법보좌관제도와 사법보좌관의 업무, 민사집행법연구, 2권

Young-Ho Kong, "A Study on the United States Trustees and Bankruptcy Administrators Programs and a Look at the Korean Bankruptcy Administration System with a View to Establishing an Analogous Program", 비교사법 제17권 2호 (2010)

김이경, 도산관리인 및 연방관재인 (2017)

강선명, "미국 파산절차 실무", 법조 제53권 제5호(통권 제572호), 법조협회(2004. 5.)

이진웅, 도산제도 개선 관련 연수보고서 (2011), 4쪽,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김경욱, "독일 도산법상 자기관리제도의 개정과 보호막절차의 도입", 경영법률 23권 1호, 한국경영법률학회(2013)

정문경, "법인회생절차에서의 채권자 참여", 도산법연구 제3권 제1호,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2012)

구본천, "회사정리제도(법정관리)와 화의제도의 개선방안", 회사정리제도(법정관리)와 화의

제도의 개선방안 공청회, 한국개발연구원(1998. 1. 13. 발표)

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연구센터, 도산감독기관 설치 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과제보고서(2009)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도산관리기관 조직 및 예산 분석, 법무부 연구용역과제보고서(2012)

김희중, "관리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2012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 결과보고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2)

정선주, 독일 사법보좌관의 지위와 제3차 사법보좌관법 개정법, 비교사법 제8권 1호

〈미국〉

MANUAL FOR BANKRUPTCY ADMINISTRATORS: JUDICIAL CONFERENCE REGULATIONS AND DIRECTOR's GUIDELINES FOR BANKRUPTCY ADMINISTRATORS II-1 to II-3 (1993)

Alan N. Resnick & Henry J. Sommer, Collier on bankruptcy(16th edition) volume 1, LexisNexis(2012)

Richard B. Levin, "Towards a model of bankruptcy administration", 44 S. C. L. Rev.963(1993)

Richard F. Broude et al., "The judge's role in insolvency proceedings: The view from the bench; the view from the bar", 10 Am. Bankr. Inst. L. Rev. 511(2002)

John WM. Butler, JR. Chris L. Dickerson & Stephen S. Neuman, "Preserving state corporate governance law in chapter 11: Maximizing value through traditional fiduciaries", 18 Am. Bankr. Inst. L. Rev. 337(2010)

Stephen A. Stripp, "An analysis of the role of the bankruptcy judge and the use of judicial time", 23 Seton Hall L.Rev.1329(1993)

〈영국〉

Barnes & Macfarlane, Bankruptcy Strategies and Trends in the UK

Bruce Leonard, Restructuring & Insolvency

Hamish Anderson, An Introduction to Corporate Insolvency Law
Insolvency Practitioners Association, Insolvency Practitioner's Handbook
Lorraine Conway, Regulation of Insolvency Practitioners
Richard F. Broude et al., The judge's role in insolvency proceedings: The view from the bench; the view from the bar", 10 Am. Bankr. Inst. L. Rev. 511
Sandra Frisby, Insolvency Law and Insolvency Practice - Principles and Pragmatism Diverge
Slaughter & May, An Introduction to English Insolvency Law
Totty, Moss & Segal, Insolvency

〈독일〉

Axel Flessner, "National report for Germany", Principles of European Insolvency Law, Kluwer
Legal Publishers(2003)

〈일본〉

櫻井 孝一, 加藤 哲夫, 西口 元 (編集) , 倒産処理法制の理論と実務 (別冊金融 · 商事判例) , 経済法令研究会 (2006. 8.)
伊藤眞,「会社更生法」, (有斐閣, 2012)
伊藤眞,「破産法·民事再生法」, 第3版 (有斐閣, 2014)
条解民事再生法【第3版】, 弘文堂
上江州純子「再生手続の機関·費用」NBL 995호 76면(2013년)
須藤英章 外,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新倒産法制10年を検証する", 新倒産法制10年を検証する, 金融財政事情研究会(2011)
加藤哲夫, "企業破綻処理法制と東日本大震災-事業再生そして地方再生の観点から",「震災後に考える - 東日本大震災と向きあう９２の分析と提言」(早稲田大学震災復興研究論集編集委員会 編, 2015)

[별첨 1 설문조사 - 관리위원회 제도 개선 관련]

1. 설문의 배경

✔ 현재 법원행정처에서 발주한 '관리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라는 주제의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해당 연구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도산 분야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되고, 위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개진할 다양한 제도 개선 의견들을 소개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 설문의 내용과 관계없이 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면, 이를 정리하여 최대한 보고서에 언급할 예정입니다.

2. 설문 내용

(1) 관리위원의 구성 관련

✔ 현재 관리위원들(2018. 4. 기준 상임 27명)은 주로, 변호사(3명), 회계사(8명), 은행 등 금융기관(13명), 상장기업 등 출신(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금융기관 출신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

Q1 현행 회생절차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에게 요구되는 전문분야가 있는지?

Q2 현재와 같은 출신 분포와 관련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

(2) 관리위원의 수, 업무량 등 관련

✔ 2018년 기준 관리위원의 담당하고 있는 인당 사건 수는 평균 약 35.9건이고, 최근 관리위원 증가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Q3 관리위원의 담당 사건 수와 관련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관리위원의 숫자를 증가시키거나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3) 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관련

✔ 현행 제도 하에서 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는 크게 (1) 의견제시 업무(도산절차관계인의 선임, 절차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회생절차 폐지나 종결 여부 등), (2) 도산절차관계인 지도 업무(부인권 행사, 회생채권 등에 관한 이의제출,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작성, 시부인표 작성, 관계인집회 등 절차 진행 등), (3) 도산절차관계인 감독 업무(각종 보고서 검토 등을 통한 관리인 감독, 조사위원 감독, 파산관재인 감독, 회생위원 감독 등), (4) 법원의 위임사무 처리 업무 등이 있음

Q4 의견제시 업무 관련하여 개선점이 있는지?

Q5 도산절차관계인 지도 업무 관련하여 개선점이 있는지?

Q6 도산절차관계인 감독 업무 관련하여 개선점이 있는지?

Q7 법원의 위임사무 처리 업무 관련하여 개선점이 있는지?

(4) 기타 의견

✔ 현행 관리위원회 제도에 대해서는 그간 (1) 도산절차에서 대심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2) 재판기능과 관리감독기능을 분리하자는 의견, (3)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감독기능이 미흡하다는 의견, (4) 관리위원의 허가사무처리가 재판청구권(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왔음

Q8 위와 같은 관리위원회 제도의 구조적인 개선 방향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지?

Q9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장·단점, 개선방향 등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문에 응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리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

발행일 | 2019년 8월
발행처 | 법원행정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Tel : (02)3480-1247
연구자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쇄처 | 주식회사 성우애드컴
Tel : (02)890-0900

〈비매품〉